

“미군기지 재협상 관철시켜 평택에 평화를!”

■ 2006년 8월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2차 교양자료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www.antigizi.or.kr



자료집 목차

<1부>

- 제1장 들어가며 :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4
- 제2장 한미간 재협상,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법 • 9
- 제3장 [Q&A]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재반박 • 18

<2부>

- 제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 33
 - <보론> 주일미군 재배치,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 51
 - <보론> 한미FTA 저지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은 '한 몸'이다! • 54
- 제5장 미군재배치협정의 문제점 :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중심으로 • 61
 - <보론>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 얼마나 들까? • 71
 - <보론>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거짓과 진실 • 76
- 제6장 주민들의 삶, 그리고 인권 • 81
 - <보론> 평화적 생존권 • 93

<부록>

1. 정부측 사업의 추진경위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일지 • 96
2. 자료
 - 1) 주요 자료 소개 : 용산협정, LPP개정협정 등 • 99
 - 2) 한·미 연합사의 작전기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_2002.12.5. • 100
 - 3)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_2003.11.1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 102
 - 4)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_2005.11.17. 한미정상 경주선언 • 117
 - 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의 추진 방안_2005.12.29. 제355차 NSC 상임 위 자료(외교통상부) • 120
 - 6)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 _2006.1.19. 한미 외무장관 간 전략적 유연성 협의 성명 • 122

1부

제1장 들어가며 :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명의 황새울’- 2006년 5월 4일, 노무현 정부가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 평택미군기지 수용 예정지를 점령하기 위한 작전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이날 여명을 틈타 경찰과 군인, 철거용역 직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농지를 점령한 뒤 대추리, 도두리, 황새울 별관을 전면적으로 초토화시켰다.

지금 한반도의 정세는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중국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전략 하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자유무역과 군사패권의 회오리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수반한다.

평택 문제의 본질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강화전략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동북아 질서를 절대적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강제로 수립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첨단무기로 무장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을 좀 더 빠르게 좀 더 가볍게 좀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군대로 만들려는 것이다. 결국 주한미군은 ‘불박이군’에서 ‘기동타격대’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은 이른바 '선제공격'을 전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훨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한 주한미군은 동북아는 물론, 세계 어디에서건 발생하는 전쟁에 공격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거리 투사능력이 향상된 군대와 이동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의 개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이 세계 주요 분쟁의 발진기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진기지의 중심이 '평택'인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대만 간 분쟁 등은 물론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주한미군이 투입되고, 한국 내 미군 기지가 이들의 발진기지가 됨으로써 한국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다. 이른바 연루(entrapment)의 위험이다.

주한미군이 '평택'에 집중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미국은 해외 군사기지들을 통해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 기지들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고 석유 등 전략자원과 경제잉여를 무제한으로 빨아들이는 패권전략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미국은 해외군사기지 유지에 광적인 반응을 보인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시작된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에서 2006년 1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한미 군사협상에서 사실상 미국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다. 그 결과 용산 미군기지와 미2사단 등의 평택 이전과 그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의 확장은 단순한 기지 이전이라는 공간이동의 의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 노무현 정권은 개혁적 정치세력이라는 국민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대미정책에서 과거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권력의 아만과 폭력의 일상화

노무현 정권이 지난 3월 6일부터 5월 4일에 이르기까지 4차례에 걸친 평택 침탈에 경찰

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대까지 동원한 것은 국민을 적으로 내모는 것이다. 과정에 자행된 인권침해는 심각하고도 광범위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군은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편법적으로 설정한 뒤 농지를 무단 침탈하고 농사에 필요한 농로와 수로, 양수장 등을 파괴하였으며, 철조망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영농활동을 차단하였다. 또 철조망 지역을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군이 민간인을 포박하고 곤봉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80년 5월 광주학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폭력적으로 대추분교를 파괴하였다. 경찰은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고, 시위대의 연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성추행을 자행했고, 불법적인 무더기 연행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가택을 수색하여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마을로 출입하는 외지인을 통제하고, 주민들마저도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평택' 침탈은 계획된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역할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가폭력의 종합 판이었다. 이는 국가가 권력을 작동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인권옹호와 민주성을 생략한 채 스스로 폭력집단으로 전략하였음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고도 정부와 수구 언론들은 이번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을 '반미세력들이 주도하는 공안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평택 주민들 의사와 관계없이 외부 불순세력이 미군 철수를 위해 기지이전 반대운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은 평택지킴이들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부르며,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온 경찰들과 군인들의 즉각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인간답게 살 권리와 평화를 옹호하려는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에 대해 정부와 수구 언론은 공권력의 폭력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색깔 입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한미 간의 합의와 국회 비준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인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평택 주민을 비롯하여 이들과 연대하는 민중들을 국책사업에 반항하는 불법세력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국책사업’은 말 그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체 차원의 사업이다. 국책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민을 대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배제하고 속였다. 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행사한 권력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해 이를 폭로하는 평택 주민들과 이들과 연대하려는 모든 민중들을 온갖 추잡하고 교활하며 폭력적인 수단으로 탄압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으로 우리의 평화가 보장되는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 가치로서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면서, 재산권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국가안보제일주의가 이번 평택 투쟁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다. 평화적 생존권의 이름으로.

노무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평택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전쟁을 보면서 과연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평택지역 미군기지 확장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평택 투쟁은 평택주민들과 우리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인 60~70대 노인들에게 땅은 자신의 역사이며 생명과 같은 것이고, 젊은 40~50대 농민들에게 땅은 삶의 미래이다. 평택 미군기지가 확장되어 땅을 빼앗기면 주민들은 삶의 뿌리가 송두리 채 뽑히게 된다. 그들의 삶을 빼앗으면서 만들게 될 미군기지가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빼앗게 될 전쟁지라하면 안보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고 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역에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고, 미래

의 위험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대안은 있다

노무현 정부에 의해 평택 침탈이 자행되었지만 그곳에 여전히 주민들이 살고 있고, 곡식들이 자라고 있다. 5월 4일 이후 일상이 투쟁이 되어버린 평택주민들과 함께 전쟁기지를 만들려는 한미 양국의 폭력적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막아내야 한다.

우리에게는 평택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 비준을 거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지만, 더 늦기 전에 문제투성이 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하며 명분과 근거가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지금' 재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제공치 않았으므로써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반환기지 환경 정화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한다고 하는 마당에 생명을 살리는 농토를 초호화판 대규모 미군기지로 넘겨준다는 것은 어느 경우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평택미군기지협정의 재협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재협상 요구를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투쟁이다.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실천이 결합되어 범국민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파탄내고,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평화는 기약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1부

제2장 한·미간 재협상,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법

평택시 팽성읍 미군기지확장 대상지역 주민 절반 안팎이 모진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택 강제 철거를 시도한다면 5월 4일, 대추분교 강제철거 때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문제에 대해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한미당국이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이 한미간 합의이고 국회 비준동의를 거친 국책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대한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입장은 절차와 내용상 문제투성이인 기지 협정에 대한 책임 회피이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외면하는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이다.

이 장에서는 한미간 재협상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과 조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재협상, 이래서 필요하다

1) 협정 비준 당시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기지 확장 계획 사실 은폐

- 국회의 비준동의권과 국민의 참정권 침해,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 위배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

실을 국회 동의과정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관련 책임 논란의 당사자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인정했듯이 “한반도 안보환경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국회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다.

또한 ‘참여연대-한겨레21 공동여론조사’ 결과(5.22)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8.8%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참정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북 방어 임무로 한정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 땅을 미국이 관련된 전 세계적 범위의 각종 분쟁에 개입하는 전초기지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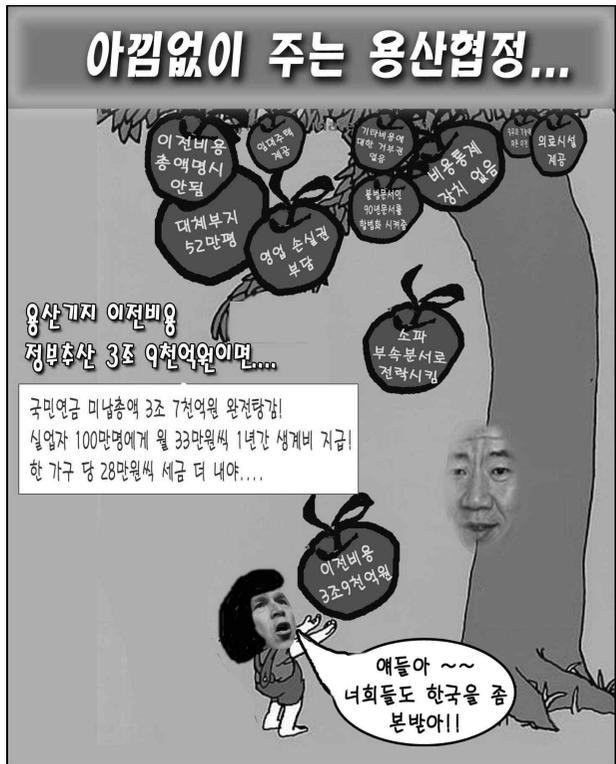
이처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평택기지 확장은 내용과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2) 협정 비준 당시와는 달리 증액 또는 추가되는 비용문제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비용 부담과 환경오염 정화비용, 성토비용 등 새로운 부담 발생

정부는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총 5조5천억 여원이 소요될 것이며 추가비용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중석 통일부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



으로 50~55억 달러 정도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윌리엄 펠런 미 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이 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68억 달러(약 6조6천억 원)의 인프라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호언하던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현재까지 예상되는 5천 여억 원의 비용 중 미국 측은 20억 원만을 부담하겠다고 강변하고 있다. 정부 주장과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이 선택이 되면 용산, 미2사단 본부 등에 대한 정화비용 최소 수조원도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협정 체결 후 미국은 확장되는 팽성 지역 부지에 대해 성토를 요구하였고 5천~6천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 또한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당초 정부가 국회에 보고했던 것보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면 이 또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한미 당국이 평택기지 확장 문제를 재협상해야 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3) 주한미군 추가감축

- 미 지상군 추가감축 되면 팽성 지역 미2사단 부지, 용산부지 추가 공여 필요 없어져



용산기지내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양국은 2005년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전력구조 조정 등 한미 안보협안'이라는 의제로 미8군사령부 등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마이클 그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지난 5월 1일, "이 시점 이후 동북아 전반에 걸쳐 미국의 군사 지휘구조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7일 윌리엄

펠런 미태평양사령관은 미 의회 증언 등을 통하여 주한미군 추가감축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3월 2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이 더 많은 임무를 맡게 되면 주한 미군을 그만큼 줄여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관한 미군 최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한미양국 국방부는 한미양국이 비공식적으로도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와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미국측 수석

대표로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협상의 핵심관계자인 리처드 톨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은 8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현저한(significant) 규모의 전투병력을 한반도 밖으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 숫자는 현재 합의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정확한 시기와 규모만 확인되지 않았을 뿐 2009년 이후 추진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제기된 것이 아니라 1990년의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에 따른 3단계 미군 감축계획 때부터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추가감축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04년에 발표된 미 의회 예산국(CBO) 연구보고서 <육군의 해외 기지 변화를 위한 대안>에서는 향후 주한 미 지상군 규모에 대하여 ▲1천명의 수용부대만 남기는 안, ▲1천명의 수용부대를 남기고 4천여 명의 여단전투부대를 순환 배치하는 안도 검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 육군은 지난 6월 처음으로 '501증원지원여단(1천명 규모로 예상)을 올 여름에 창설하였고 3천명 규모의 순환배치여단을 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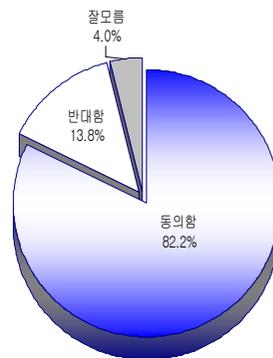
이처럼 주한미군이 추가 감축되게 되면 미군기지재배치계획에 따라 주둔하기로 되어 있는 14,491명의 확장된 캠프 험프리 주둔 병력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병력 수가 대폭 줄어든다면 그에 상응하여 기지 규모를 줄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4) 주민이 싸우고 있고, 국민도 재협상을 바라고 있다

문) 주한미군이 이전할 평택기지가 한반도 방어 이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기지이전비용이 애초 예상보다 대폭 증액될 경우, 한국 측이 미국 측에게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ase:전체 응답자, N=1004)

(참여연대-한겨레 21 공동여론조사, 2006.5.18)



설보호구역 지정으로 농지를 빼앗긴 지 3개월이 지난 7월말 현재에도 절반 안팎의 주민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삶터를 떠나지 않고 현지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농지 강탈에 대한 분노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언제 철거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경제적 손실, 유무형의 국가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4년째 완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야말로 한미양국이 재협상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평택기지에 대한 용도와 이전비용 변경 시 재협상 동의 여부’에 대하여 82.2%가 동의한 앞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재협상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한다. 따라서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주권재민의 원칙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다.

2. 한미간 재협상, 가능하다

1) 협정에도 보장된 재협상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를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한미양국이 합의한 2개의 관련 협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용산기지이전협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은 이전의 시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제7조 제2항에는 "이 협정은 양당사국의 상호동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1년 앞서 서면으로 이를 종료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 협정의 합법적 중단의 길을 열고 있다. 미 2사단 이전이 포함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조항들이 있다.

이처럼 재협상의 법적 근거는 현재 미군 재배치 협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재협상 사유가 될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는 주한미군 추가감축, 이전비용, 기지 사용 목적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2) 재협상 사례도 많아

- LPP 협정의 개정, 용산기지 이전 합의 후 사업 중단, 오키나와의 사례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미2사단 재배치의 근거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의 경우, 한미간에 2002년에 합의되어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쳤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재협상을 한 직접적 사례다.

한미양국은 90년에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그 일부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 등으로 미군감축계획이 변경되는 와중에 미국이 17억 달러로 합의했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95억 달러로 제시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해외 사례로서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문제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10년간 지연되다가 일본정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감안하여 새로운 안을 미측에 제시, 재협상을 통해 결국 수정안으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군기지문제는 아니지만 한미양국이 합의했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신축계획도 2002년부터 3년여에 걸친 우리 역사와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무산된 바 있다.

미국이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국방부는 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이 8년에 걸친 주민의 반대로 지연되자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부지 규모를 당초 22만7천 평에서 5만6천 평으로 축소키로 한 사례도 있다. 또, 일본정부의 나리타 국제공항 활주로 추가 개설이 산리즈카 주민을 비롯한 전국적 투쟁과 단 3가구의 이주거부로 40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사례도 있다.

3) 기존 기지로의 축소통폐합,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는 북에 대한 남의 군사력 우위를 반영하고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초래할 정치·군사·경제적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주한미군의 대규모 조기 추가감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추가감축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와 그에 따른 부지 규모 재산정 과정은 정부내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공여하기로 한 362만평 확장 부지 규모의 타당성과 적절성 여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에 기초하여 한미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전면 재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한미간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등은 “미국의 군사 지휘구조 재정립”을 반영한 후 축소

재편하여 기존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

- 용산기지 이전 대체부지 중 28만평 규모의 골프장(18홀)은 한국군 골프장 등 다른 골프장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부지 소요를 축소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위탁 편의시설 규모도 대폭 축소.

- 미지상군은 수용부대(증원지원여단)만 남기고 CBO보고서에 제시된 대안처럼 신속배치 여단 등 나머지 부대는 미국 영토로 재배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휘말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경비(방위비 분담금) 등 각종 부담도 줄일 수 있음.

- 한미양국은 추가감축을 반영하여 기지 규모를 다시 산정. 이 과정에서 위법 부당하게 신규 기지로 제공된 20만평 규모의 임대 방식의 미군가족주택 부지를 제외.

- 추가감축 후 잔류한 미지상군은 기존 캠프 험프리 기지 등에 주둔. 이를 포함하여 K-55 공군기지와 기존 캠프 험프리 기지로의 축소통폐합 방식의 주한미군 재배치가 가능.

- 정부는 한미간 재협상과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진행되는 동안 기지 확장사업을 중단하고 주민의 영농을 보장.

4) 재협상, 주민 등 모두에 이익

이와 같은 방향으로 평택미군기지 확장 문제가 매듭 되면 주민을 비롯한 국민은 물론, 나아가 정부의 이해관계도 일정하게 충족될 수 있다. 주민들의 경우 현재 위치에서 자신들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평화적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약하여 한반도 평화위협을 줄일 수 있다. 정부로서도 강제철거로 인한 대규모 충돌과 불상사, 그로 인한 민심이반을 피할 수 있고, 이 사업이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면서 끼치게 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반미감정 확산과 미군철수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도 불리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5) 정부, '시설과잉' 막으려면 재협상 나서야

이처럼 재협상의 근거와 사유가 분명하고, 국내외의 사례도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을 우선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도 추가감축에 따른 기지규모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재협상을 추진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강제철거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추가감축 등의 이유로 기지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가 미국의

반발이 두려워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한다면, 국회 자료가 지적하는 대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김영일 외,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예산현안분석 제7호, 국회 예산정책처, 2005. 6, 13~14쪽)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한미간에 협의된 것이 아니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재협상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따른 기지규모 축소가 예견되므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의 기본 의무다. 만약 정부 관계자들이 이를 회피하여 주민공동체가 파괴되고 엄청난 사회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면 평택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이다.

3. 하반기 온 힘을 다해 정부의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미군기지 재협상을 실현시키자!

정부는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오는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주택철거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 7월 28일 법원에 주민 거주 주택에 대한 명도소송과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고 법원 판결이 내려질 10월 즈음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른바 ‘불법 영농’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8월 중순부터 빈집철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4일 대추분교 파괴와 농지 강탈에 이어 또다시, 아니 더욱 심각한 대규모 충돌과 유혈사태가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눈을 빼앗긴 데 이어 집마저 강제로 철거당한다면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피땀 흘려 가꾼 땅에서 발붙일 곳 없는 처지가 된다. 4년에 걸쳐 이 시대의 모순을 짊어지고 위대한 투쟁을 해온 주민들이 자기 땅에서 강제로 쫓겨나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주민들은 말한다.

“공장을 짓는다면 우리가 이토록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기지 만든다는 데 우리가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몸과 맘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보상금 몇 푼 더 받으려고 저런다’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고, 손자 같은 전경의 발길질에 내동댕이쳐진 것도 여러 번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자.

“과연 니였다면 그 모진 압박과 회유 속에 4년을 버틸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물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응답을 주민들에게 들려주자. 그들에 대한 한없는 존경과 애정을 후회없는 실천으로 보여주자.

정부는 알고 있다.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것이 기지 규모 축소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겉으로 드러난 비용 말고도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 상당수의 주민들이 끝까지 버티고 싸울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감히 재협상을 요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들과 힘을 합쳐 재협상을 실현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주민도 살고 우리도 살지 않겠는가?

재협상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모인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6년의 투쟁을 거쳐 한미당국을 불평등한 SOFA 개정협상에 나서도록 만들었고 그 힘으로 13년을 싸워온 주민들과 함께 매항리 폭격장을 폐쇄시켰다.

이 흐름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두 여중생을 추도하고 살인미군을 처벌하기 위한 투쟁에 백만의 촛불을 불러일으켰다. 어이없는 두 여중생의 죽음이 월드컵에 묻히고 여론공작과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수천 수만의 촛불이 광화문을 뒤덮은 것이다. 늘 쉽지 않은 고난에 찬 투쟁을 거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온 과거 투쟁 속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면, 평택 팽성 주민들의 말처럼 '질긴 놈이 이긴다'는 것이다.

하반기 온힘을 다해 정부의 강제철거에 맞서 주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한미 당국을 미군기지 재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어내자!

1부

제3장 [Q&A] 정부의 주요 주장에 대한 재반박

1. 용산기지 이전은 지난 88년부터 우리가 미국 측에 요구한 사업으로 주한미군재배치와 관련 없다?

○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80년대 중 후반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 미국의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해외주둔 미군 및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함께 고려되어 왔던 것으로,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제임스 릴리는 2004년 9월 30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1986년부터 검토”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7차 FOTA 회의. YTN

○ 92년 북핵문제의 본격화 등의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이 중단된 이래, 2003년 기지이전 협상을 재추진하기로 한 것은 미국 측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이 반영된 결과이다.

미국 측은 이와 관련하여 애초부터 용산기지 이전 합의와 주한미군 전력증강, 주한미군 재배치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 왔다.

- Defense Infrastructure [GAO(미 회계 감사원) 보고서, 2004. 6. 15]

“ 2001년 미 국방부의 4년 주기 국방태세검토보고서(QDR)에 따라 기지재배치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2003년 3월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와 기지통폐합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2002년 한미가 합의한 바 있는 LPP를 개정하고 용산기지를 이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최근 공개된 국방부 정책실 작성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및 LPP개정 협정 관련 Q&A 자료(2004. 7. 23)에 의하면 “용산기지를 오산·평택지역의 핵심통합기지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문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국회비준에 앞서 작성된 것이었다. 당시 국회 공청회에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관료들이 ‘용산기지 이전과 GRP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용산기지 이전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2.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측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전액 부담한다?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무관하다면서 그 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한다고 합의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0월 21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를 했던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미국 측과의 협상과정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그러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80년대에도, 2003년 재추진되던 시기에도 미국 측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 재배치 계획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도 기지이전 검토보고서(2004.11.26)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한 것은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과 같은 새로운 협상의 변수를 용산기지 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의 한국 측 비용 전액부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이를 두고 2004년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FY 2004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서는 “목표를 초과달성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용산기지 이전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계없거나, 미국 측이 용산기지에 계속 주둔하기를 고집했다면 이러한 평가는 나올 수 없다. 미국 측의 이러한 평가는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논리를 왜곡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기지이전에 대한 추가비용 부담은 절대로 없다?

○ 2004년 정부는 기지이전에 따른 추가비용부담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회비준 직후인 2005년 3월, 라포트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 미국 부담은 6%에 불과, 한국은 59억 2000만 달러 부담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으며, 2006년 3월,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은 미 하원 세출위원회 보고에서 “한국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비용으로 68억 달러(약 6조6640억원)의 인프라 비용을 대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기지이전비용이 국회 보고 액수 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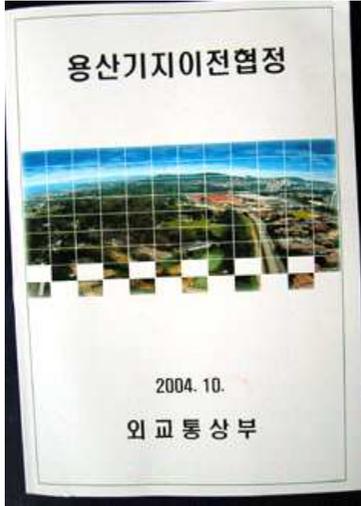
○ 실제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게 된 용산기지 이전비용(35억~55억)과 미 2사단과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용 1조 5132억 원(최소 16억 달러 이상, 2004년 국방부 국회제출 자료), 이전비용으로 쓰일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17억 달러(국방부 추산) 등을 포함하여 최소 68억 달러에서 88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외에도 미군 측이 오염된 반환기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고 반환함에 따라, 국내법에 따라 기지를 사용하기 위해 최소 5천억 원에서 최대 12조 원에 달하는 환경복구 비용이 추가될 것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평택기지에 대해 2-3m 높이로 성토작업을 요구하고 있어 최소 5천억 원 이상이 추가소요 될 가능성이 있다.

4. 반환기지 환경치유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

○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 ‘통상 반환 12개월 이전에 환경분과위원회 과제로 상정하여 환경오염조사 후 미측 비용으로 오염 치유 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용산기지이전협정. 2004. 10. 외교통상부 / 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 10. 11)

○ 그러나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 4월 10일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국방부 측은 '(국내법 수준의 치유) 원칙을 무조건 고수할 수는 없으며 국익을 전체적 안목으로 조망하면서 환경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 측 부담 입장을 밝혔다.

○ 급기야 7월 13일 개최된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기름 탱크와 지하수 오염 제거, 불발탄 제거 등)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 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반환대상지에 대한 '조사'과정은 사라진 채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대상지가 결정되면서 반환대상지에 불발탄 제거 등의 기초적 환경치유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매향리 사격장이 포함되었다. 또한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8개 항목에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결국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에 오염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거나 오염치유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나머지 기지협상에서 이번 협상의 결과가 똑같이 적용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실상 대부분의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한국 측에서 떠맡게 된 셈이다.

5. 평택기지이전은 교통의 편리함, 기존미군시설 및 항만 기반시설 활용 등의 이유로 결정된 것이지, 동북아 지역에서의 분쟁사태 발생시 주한미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투입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 그러나 지난 2004년 6월,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병력 이동은 전투능력과 연관이 있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남으로 이동해 오산·평택 허브로 통합되면 군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며 평택으로의 이전이 기동성 강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미군재배치가 ‘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하고 기동성을 높여서 재배치하려는 계획’(2004. 10. 19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정해웅)임을 시인하고 있

다.

○ 지난 2005년 6월, 미국 측은 평택으로 이전할 미2사단이 해외주둔미군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형 사단으로 개편되었음을 발표하였다.(국방부 뉴스, 2005. 7. 11) 이러한 재편에 따라 유사시 원·근거리 및 육해공 통합 전투력 구사가 가능해 지게 되었으며, 이는 곧 ‘한반도 ‘블박이군(軍)’이 아니라 전 세계 분쟁지역에 기민하게 투입될 수 있는 ‘유동군(流動軍)’으로 탈바꿈(조선일보, 2006. 1. 21)한 것이다

○ 평택기지 확장이전 대상 부지 349만평 중 용산기지 대체 부지 52만평을 제외한 297만평은 미 2사단 이전부지와 평택 공군부대 추가부지이다. 미래형 사단으로 바뀐 핵심 전력이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곧 평택기지가 전략적 유연성 구현의 핵심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평택기지 이전 문제를 단순 효율성의 문제로 치부하려 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철저히 속이고 있다.

6.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 2006년 1월 19일 ‘동맹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 동북아 긴장 고조 등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국외이동시 사전협의 절차”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한국 측의 막연하고 자의적인 기대일 뿐, 객관적 사실은 아니다. 전략대화 공동성명에서는 애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사전협의제나 2003년 미측에 외교각서로 전달한 요구안(①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미국의 대 한국 방위공약 틀 내에서 운용 ②우리가 연관되지 않은 제3국과의 분쟁에 개입되는 것은 불가 ③사전 협의 필수)은 관철되지 못함으로써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설령 사전협의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이는 한국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한미간 사전협의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고 공언하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보좌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2006. 2. 16)에서 “미국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군 배치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되, 그 협의에 구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현으로 인한 동북아 분쟁개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현재 시점에서 없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7.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외부의 무력공격에 대처하고 그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따라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시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파견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발동 요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 동 조약 제2조의 위반이다.

○ 이와 관련하여 NSC 등 정부 측에서도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NSC 상임위 회의록. 2005. 12. 29) 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측에 미군기지를 공여해야 하는 의무와 주한미군 주둔 지원금 분담 의무의 근거는 없어지게 된다. SOFA 협정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고 방위비 특별협정에 따라 분담금을 지원하는 데 두 협정 모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협정들이기 때문이다.

8.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통해 5167만평을 반환받고 362만평을 신규 제공해 4800여만 평의 공여부지를 반환받는 효과를 얻는다?(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홍보자료2)

○ 그러나 반환면적의 대부분은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던 땅이며, 진작 반환되었어야 하는 땅이다.

정부가 밝히고 있는 주한미군의 반환면적은 총 5167만 평이며 이중 기지면적이 1218만 평, 훈련장 면적이 3949만 평이다. 이 중 훈련장 3,200만평은 임시 공여지로서 사유지가 대

부분이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주민들조차 자신의 땅이 미군에게 공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심지어 반환 훈련장 환경조사를 위해 직원들이 현장 조사를 할 때에도 그 경계를 파악하지 못해 미군 측에 훈련장 규모와 경계를 물어야 하는 우스운 일도 벌어졌다. 사용되지 않거나 공여목적용 상실한 땅은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한 SOFA 조항에 따라 사실상 이미 반환되었어야 하는 데 그동안 미군당국은 제때 반환하지 않아 SOFA 조항을 어긴 셈이며, 정부 또한 제대로 공여지를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해 왔던 것이다.

진작 반환되었어야 할 땅을 이번 LPP에 포함시킨 것은 362만평 신규 제공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반환 면적을 확대 과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문제는 362만평 제공 및 그 외 추가 공여 부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인데, 평택기지 확장이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인한 것이며,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362만평을 내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최근 주한 미지상군에 대한 추가감축이 제기됨을 고려할 때, 362만평은 과도한 부지이다.

○ 반면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훈련장을 대거 반환받는 대신 미측에 35개의 한미공동 훈련장과 9개의 안전지역권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면적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미측에 공여되는 땅은 362만평이 아닌 훨씬 더 큰 규모라고 봐야 할 것이다. 현재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필승사격장 면적이 1,800만 평이며, 파주 무건리 훈련장의 경우



무건리 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들. 민중의소리

미측과의 공동사용을 위해 1천만평 규모를 유지하려고 훈련장 안에 위치한 마을들과 사유지를 수용하고 있다. 새로운 공동훈련장의 구성과 확장을 위해 평택뿐만 아니라 파주에서도 주민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군 전용훈련장이 아닌 한미 공동사용의 경우 환경정화나 훈련피해 등에 미측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동사용 훈련장의 경우 앞으로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실제 반환 면적(1,967만평) 보다 신규 공여 면적(362만평+신규공여 35개 한미공동훈련장+9개 안전지역권)이 훨씬 많을 것이다.

9.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은 한·미간의 합의와 국회의 비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합법적인 국책사업이다?(국방부 장관 정례 브리핑, 2006.5.3 / 한명숙 총리 대국민 성명(2006.5.12))

○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을 뿐더러 증대한 내용들을 은폐, 왜곡한 채 국회비준을 받았으므로 국민의 의사와 국가의 이익이 정확히 반영된 국책사업으로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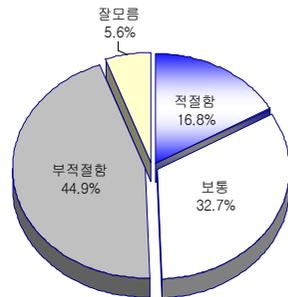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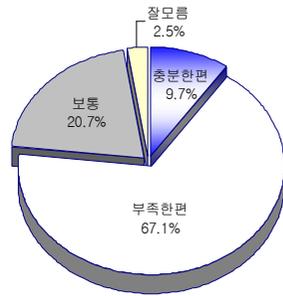
○ 국회비준과정에서 정부는 기지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을 허위로 보고하며 비준을 관철 시켰다.

- 우선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사업이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를 부정함으로써 중요한 안보정책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

- 또한 정부는 이전비용과 관련한 막대한 국민혈세부담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협정 체결 후 발생한 환경정화나 성토 등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국회비준 당시 검토되지 않았다.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대부분은 기지이전사업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기지이전협정 통과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참여연대-한겨레 21 공동여론조사, 2006.5.18)

문) 지난 3년간 진행된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기지이전 협상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설명했다고 보십니까? 부족했다고 보십니까?(Base:전체 응답자, N=1004)
 (참여연대-한겨레 21 공동여론조사, 2006.5.18)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그런 변명을 할 여지조차 없어졌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관련 미국 측 핵심관계자인 리차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이 8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한미군 숫자는 현재 합의된 2만5천명선 이하로의 수준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규모와 시기만 문제일 뿐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확인된 만큼, 즉,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소요에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만큼 감축의 주된 대상인 지상군이 들어갈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확장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해야 할 이유와 근거는 명백해졌다.

정부는 더 이상 무책임하게 직무유기하지 말고 우선 평택기지확장 사업 중단을 미국에 통보하고 미군재배치 협정이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재협상을 개시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추가되는 비용문제, 주민들의 완강한 투쟁도 재협상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11.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동맹국과의 외교적 신뢰성을 저해함은 물론, 이 사업으로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용산기지와 다른 미군기지 환수도 늦어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국방부장관 브리핑, 2006.5.3)

○ 한미간 외교문제로 비화된다는 정부 측 주장은 미대사관 직원아파트 신축이 중단되었던 사례나,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문제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조정된 사례를 보았을 때 과장된 것이다. 설령 외교적 문제로 비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협상을 잘못된 정부에 있으며, 이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 또한 정부는 사업지체로 인한 추가비용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국방부, 미군기지 이전 홍보자료2)하고 있지만, 그 추산의 근거는 어디에서도 밝히고 있지 않다.

오히려 추가비용문제는 부실한 협상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협상 초

기보다 이전 비용은 1조원 이상 늘어나 있으며,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한 추가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협상 부실로 인한 추가비용이 압도적으로 크다.

12. 정부는 그동안 주민들과 150여회에 달하는 대화를 하였으며,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범대위 간부들과도 38회에 걸친 대화를 진행하는 등 충분히 노력해 왔다?(국방부장관 브리핑, 2006.5.3)

○ 그러나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화를 한 것이 아니었다.

- 2004년 1월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이전문제가 언론화되면서 수용예정지로 알려진 팽성주민대책위와 서탄주민대책위가 국방부장관 면담요청을 하였다. 이에 대한 국방부는 평택시장, 시의회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면담하여 평택시민의 뜻을 전달받았으며, 미군기지이전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모든 단체의 면담 요청을 일일이 수용할 수 없다는 답신(2004. 2. 2)을 보냈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도 없이 국방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 8월 349만평에 대한 수용결정 후 보상과 특별법에 대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 2005년 6월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국방부, 미군기지이전 해설자료2)과는 달리, 한미합의 직후 있었던 2004년 9월 1일 특별법 공청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이날부터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중심으로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수용대상지 안에 있는 주택, 토지 등에 대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등 토지매수를 위한 일체의 절차를 거부하였고, 토지 협의매수도 거부하였다.

-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완강하자 국방부는 2005년 8월, '협의매수와 이주대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아래 경찰들을 동원해 대추초등학교로 밀고 들어와 이에 항의하는 6-70대 노인들을 폭행하고, 주민 4명을 불법연행하기까지 하였다.

- 국방부는 올해 4월 28일 주민들과의 대화를 약속한 그 순간에도 군과 경찰을 동원한 행정대집행 예행연습을 진행하였다. 4월 30일 공식적인 대화 자리에서 평택 미군기지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간다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군인, 경찰, 용역을 동원해 농지에 철조망을 치고 대추분교를 파괴한 한 것은 대화를 하려기보다 대화를 수단으로 여론을 무마하려는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지난 경과를 보았을 때,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대화는 공권력과 폭력을 앞세운 요식절차이거나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사태해결을 위한 성의있고 실질적인 대화로 보기 어렵

다. 5월 4일 강제대집행 후 대화 재개를 요청한 정부가 대화에 나서려는 주민대표 김지태 위원장을 구속시킴으로써 사실상 합리적 대화와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13.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하였으며, 반대 주민은 극소수이다? (국방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2006.5.4)

○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으로, 국방부장관은 부채지주가 대부분인 확장예정지 토지 80%를 협의 매수한 것을 두고, '거주 주민 80%가 협의매수에 동의'한 것으로 거짓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소수로 몰아가려 왜곡하고 있다.

○ 평택 확장이전 대상 부지 362만평 중 부채지주(소유권만 갖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50%를 상회한다. 농지와 마을 전체가 수용되는 대추리, 도두2리 200여세대의 경우 주민들이 해당 토지를 지난 1950년대부터 간척지를 스스로 매립하여 농지로 만들었으며, 기지 확장으로 마을과 공동체가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점에서 격렬히 반대해 왔으며 농지에 대한 강제집행 후에도 절반 안팎의 주민들이 남아 정부의 강제토지수용과 주택철거에 항의하고 있다.

○ 정부 스스로도 주민들의 반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부담을 느꼈는지, '80%의 토지가 협의매수된 것을 두고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담화문에서는 '80%에 가까운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동의'하였다고 거짓 발표하고 있다.

○ 또한 설령 반대 주민들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존권을 부당하게 짓밟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법률은 공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부득이할 경우 강제집행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이번 평택기지확장은 정부의 정보 은폐와 왜곡으로 졸속 추진되었으며, '공익'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사안이다.

14. 주민 대책위 간부들에게 돌아갈 보상액이 10억을 넘는다, 백만장자가 생존권 투쟁을 한다?(국방부장관 정례 브리핑, 2006.5.3)

○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일체의 보상을 거부해 왔으며, 현재 국방부의 강제 공탁 조치로 그나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기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완전히 은폐하고 있다.

○ 주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왔으며,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국방부의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을 모두 거부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거부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의 땅과 집 등에 대해 강제수용조치를 취했으며, 공탁을 거쳐 농민의 토지소유권을 국방부로 강제 이전하였다. 국방부가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놓고, 이제와서 보상액을 운운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국방부가 주겠다는 보상액도 거부한 채 다만 ‘내 땅에서 농사짓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말 보상금만을 원했다면 700일이 넘는 시간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하지는 못했을 것이며 매년 연행과 부상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사람이 돈만을 위해서는 결코 그렇게 끈질기게 싸우지 못한다는 것을 국방부도, 언론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돈을 앞세워 주민들을 매도하고 있다.

○ 황새울은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군에게 제 땅을 빼앗기고, 해방 후 미군기지 확장으로 인해 두 번째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개펄을 등짐으로 매워 일군 땅이다. 손이 갈라지고, 등짐으로 등이 다 까지고, 먹을 것이 없어 배추를 물에 씻어먹으면서 개간했던 그 땅에서 반세기동안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는 것은 삶을 내놓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15. 외부단체들이 개입해 주민들을 불모로 억지논리로 현혹한다?(국방부, 미군기지지 전 홍보자료2)

○ 우선, 미군기지 확장, 재배치는 평택 주민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정부는 이번 평택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의견을 생존권, 또는 보상금 문제로 치부하면서 ‘외부단체의 개입’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 시인하고 있듯 평택문제는 ‘국책사업’이며,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사업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직결되며, 미군의 대북,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어 항시적인 긴장과 위험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문제에서 ‘외부단체’가 될 수 없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헌신성과 치열함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 2003년 7월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이전문제가 언론화되면서 팽성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고, 349만평 확장에 대한 한미간 합의 이후 2004년 9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을 들며 우리 땅을 지키기겠다는 마음으로 싸워오고 있다. 7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촛불행사는 적극적인 자기의 의사 없이 외부의 요구나 개입 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평택지킴이'가 되어 투쟁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가 외부단체 운영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가 2005년 2월 발족한 것만 보아도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국방부는 애써 주민들과 평화세력을 갈라놓으며 기지확장 문제의 본질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16.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국방부 장관 대국민 담화, 2006.5.4)

○ 국방부장관은 지난 5월 2일, 황새울 일대 285만평에 대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 결과 시행지시를 내렸고 5월 4일 경찰 12,000명, 철거전문 용역 1,500여명, 특공대를 비롯한 군 병력 3,000명 등을 동원해 대추초등학교를 완전히 파괴했으며, 눈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된 이유로 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서 경계울타리 설치 및 병력 주둔을 들고 있다(평택시청에 보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통보 2006. 5. 4)

○ 이 같은 조치는 독재정권시절에 제정되어 그 한계가 뚜렷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 조차도 완전히 위배한 초법적 조치이다

-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이



란 군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이라 함은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군사시설’이란 전투를 예상하고 설치되어 있는 일부 시설만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지 아무 시설이나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 황새울 일대는 마을 농민들이 농사짓는 농토로서 군사시설보호법이 규정하는 진지나 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이 없다. 그런 땅에 대해 국방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2006. 5. 1)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5월 4일 보호 대상인 철조망과 그를 지키는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조치이다.

- 국방부의 행태는 기지 확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땅을 빼앗기 위해 취한 조치에 불과할 뿐, 어떠한 적법성도 가질 수 없다.

2부

제4장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

1. 전략적 유연성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1) 전략적 유연성 : 장비, 기지사용, 병력이동,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이란 해외 주둔 미군을 전 세계 어느 곳으로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군대를 신속기동군으로 탈바꿈하여 재배치하며, 그 작전 범위를 유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연성은 장비의 유연성, 병력이동의 유연성, 기지 사용의 유연성,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 등을 모두 포괄한다.

장비의 유연성은 해외주둔 미군기지 내의 장비를 전 세계적 범위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입출입을 유연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미국은 핵 잠수함, 핵 탑재 항공모함 등 핵무기 관련 장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핵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텔스기 등 공격적 무기들의 입출입이 잦을 경우 혹은 MD무기들이 배치될 경우 역내 국가들에게 위협적 요소로 인식될 것이다.

병력이동의 유연성은 신속기동군 체제로 전환된 미군 병력의 입출입이 유연해진다는 의미이며, 기지사용의 유연성은 불박이 군이 아닌 전 세계로 투사 가능한 이들 신속기동군이 전 세계의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전협의 절차의 유연성은 이들 장비, 병력, 기지사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지를 제공하는 공여국과의 협의 절차를 융통성 있게 하여 미군의 드나듦에 대한 제약요소를 최

소화한다는 의미이다.

2)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 미군기지 재배치는 ‘하드웨어’

사실, 전략적 유연성이 전적으로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미국은 90년대 이래 주한미군 주일미군 등의 해외주둔 미군의 지역적 역할의 확대를 강조해 왔다. 다만, 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한 대테러 전쟁 개념, 그리고 이에 따른 미군의 군사혁신이 본격화된 부시행정부에 와서 보다 구체적인 개념과 계획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군사혁신과 새로운 군사전략에 바탕을 둔 미군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 편제와 배치, 작전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적 표현이다.

따라서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각 지역 미군의 역할과 작전범위를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하고(역할 변경, 전략적 유연성), 이를 위해 미군을 신속기동군 체계로 전환하여 부대와 기지를 통합하고 재배치(해외주둔미군재배치 GPR)하며, 변화된 미군의 역할과 군사적 기능에 대한 동맹국들의 공동협력체계를 형성(동맹 재정-지역동맹화)하는 것 모두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스스로의 고백적 표현을 빌자면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 기지 재배치와 군사혁신은 그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셈이다.

3) 미군의 군사혁신(RMA)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의 군사혁신과 이에 기반한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를 전제로 한다.

(1) 군사혁신(RMA)과 군사변환(MT)

미국은 정보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군사혁신(RMA, Revolution in the Military Affairs)에 부응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군사변환의 핵심은 미군의 △장거리 투사능력을 높이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향상하며, △육·해·공·해병의 통합 운용능력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군사혁신에 상응하는 군 편제는 독립 여단들이 자유롭게 결합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듈형(규격화된 조립단위)군’이다. 이들은 첨단과학 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이다. 한마디로 자유자재로 이동 결합이 가능한 경량화된 첨단 조립식 군대로 만드는 것이다.

(2)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은 불량국가,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WMD)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전 세계 군사태세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해외미군재배치 계획”(GPR, Global Posture Review)을 발표하였다.

GPR의 특징은 △미군운용의 효율화 △기지의 분산화 △부대배치의 기동화로 요약된다. 신속기동군의 장거리 투사의 전초기지(HUB)를 세계 전역에 확보하고 이를 위해 기지를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수많은 신군사전략들을 발표해 왔지만 부대편성이나 배치 등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GPR은 2001년 부시 행정부 집권 이래의 군사적 검토를 집대성한 것으로 대테러 전쟁 시대의 군사 기술과 운용의 틀이 될 부대재배치계획(GPR)을 구체화한 것이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 경향신문 2004. 8. 19

※ GPR은 불변의 계획인가?

정부는 GPR이 아직 형성중인 개념이라고 주장하여 주한미군재배치나 용산기지 이전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GPR은 이미 실행 중인 계획이다. 단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는 GPR이 미국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군이 존재하는 각 나라들과의 협상과 조정이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GPR이 협상대상을 갖는 가변적이 계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저자세를 취하면서도, 국민에게는 각종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이 GPR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4) 동맹의 재정의와 지역동맹으로의 전화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자면 이 경우 냉전시기 동안 쌍무적으로 형성된 개별 국가별 안보조약 및 동맹체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한미동맹, 미일동맹 등은 이 동맹의 임무와 역할, 군사행동의 반경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은 일본, 서유럽(NATO)등과 함께 각각 '미일 공동안보선언'(1996년)과 'NATO의 확대와 그 사명의 재정의'(1999년)을 발표하여 '냉전이후의 동맹 재정의'를 추진해왔다. 그 핵심은 미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변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맹의 활동범위와 역할을 지역적 지구적으로 확대(이른바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와 동맹간 '상호운용성' 강화)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이후 GPR이 공식화됨에 따라 각 나라와 맺은 상호안보조약 혹은 동맹의 임무와 역할을 변경 확장하려는 노력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동북아에서 미-일 양국은 국제 테러,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지역동맹으로서 '2차 동맹재정의- 2차 미일공동안보선언'을 준비 중이다.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미동맹 재편 논의도 이러한 맥락이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하여 "한미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데 만족을 표명"하고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고 선언했다.

또 이 선언에 따라 한미 외무장관이 회담을 열고 채택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한미 동반자 관계가 광범위한 이익과 목표를 포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기초위에 한미동맹을 침략적 지역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제들을 설정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는 합의를 이룬다.

이들 합의는 한미동맹을 대북 방어형 군사동맹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안을 다루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를 담고 있다.

5) 테러와의 전쟁, 선제공격 전략,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미국이 추구하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은 이 역할 변경과 군사적 재배치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과 긴밀히 결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9.11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영구전쟁을 선포한다. 테러문제는 더 이상 치안

의 대상이 아닌 전쟁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국가안보전략 2002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근접한’ 국가와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해 선제공격” 전략을 정식화하고, 북한 이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제공격 개념계획안(2004년 콘플랜 8088-02)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대테러 전쟁을 선포한 부시 행정부는 기존의 전쟁전략도 수정하여 ‘1-4-2-1 군사전략’을 21세기 신전략으로 채택하였다. △ 9.11이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정된 미국 본토 방위(본토방위사령부, 국토방위부 신설), △4개 지역(유럽,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아시아)에서의 전쟁역제,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 중 1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가 1-4-2-1 전략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클린턴 시대의 전쟁 계획이 현상유지 개념이라면 부시에 와서는 결정적 승리, 정권 제거 등으로 공세화된다.

※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만의 유연성이 아니다 - 동맹국에 대한 지역·지구적 협력 압박

전략적 유연성은 미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등에서 자국방위 임무를 뛰어넘는 이른바 ‘대테러전쟁’에 동맹국을 동원하고 있다. 그 외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CSI(컨테이너안보구상), RMSI(지역해양안보구상)에 대한 참여를 동맹국에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역적 지구적 역할을 한미동맹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한미간에는 2004년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어 이미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동 군사작전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

1) 탈냉전 이후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 재배치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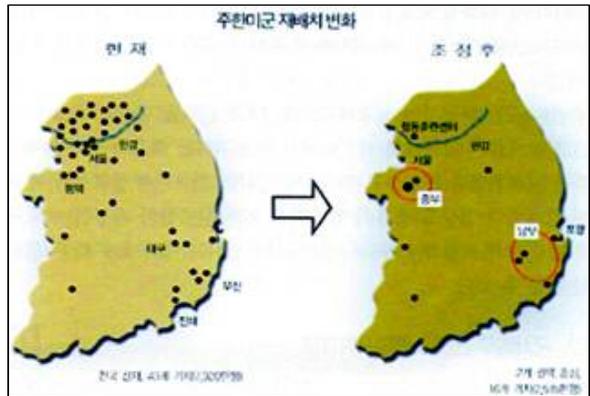
미국과 한국 간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논의는 알려진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은 예산과 무역의 쌍둥이 적자로 상징되는 미국경제의 침체로 국방비 감축이 적극 검토되던 시기였다. 이는 동맹국의 방위책임 증가와 해외주둔 미군 감축과 재조정 압력으로 이어졌고 1989년 7월 미 상원은 국방예산에 대한 수정안(년-위너)을 통해 국방부에게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감축과 재조정방안의 제출을 결정하였다.

이에 1990년 미 국방부는 3단계에 걸쳐 동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는 동아시아 전략 구상을 의회에 제출했고 이 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 야전사령부가 해체되고 1991년 11월까지 약 7천명의 주한미군이 철수하였다.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는 북핵문제로 연기되었고, 1995년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동아시아전략은 기존 동맹체제와 미군의 해외주둔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문제는 긴밀히 연관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1989년 이래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 강화가 거론된 이래 한미 양국은 1995년 한미공동 연구를 거쳐 2003-4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의제화하였다. FOTA에서는 주한미군 재배치 외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대북방어' 주도, 주한미군은 '지역안정' 기여 등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가 논의되었다.

한미 양국은 FOTA를 통해 제2사단 등의 감축 및 신속기동군화, 용산기지의 평택이전과 기지통폐합 등에 합의하여, 2004년 10월 22일 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였고, 그 해 12월 문제의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협정들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 한편,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한국내의 반론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기지이전 협정 비준 이후로 유보되었다.



2004 국방백서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대한 합의가 끝난 후인 2005년 2월부터 한미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비밀회의를 통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연합지휘체계 개편 구상 등 나머지 문제를 논의해왔다.

SPI 의제로는 △미래 한미동맹 비전연구, △전시작전권 환수 및 한미연합지휘체계 문제, △미군재배치 점검, △반환기지 환경오염 부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2006년 1월 19일 첫 고위전략대화에서 한미 외무부(국무부)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사실이 공표되었다.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

성에 따른 통제장치 등의 문제는 이후 차관급 고위전략대화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 미군재배치는 한 몸”

한미양국은 기지재배치 협정을 우선 체결한 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기지재배치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국민적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가 서로 다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에 대해서도 무시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였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04년 주한미군 기지재배치 협정 비준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재배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1986년부터 검토”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 대사, 조선일보, 2004. 9.30)하였다는 언급과 “해외 주둔 미군이 현재 유럽과 동북아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미국의 군사전략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미군의 이동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 해외미군기지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4개년 국방계획검토QDR, 미 국방부, 2001)는 미국 문서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은 한 몸으로 논의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재배치를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2사단의 평택이전과 재편, 용산 기지(미8군 사령부 등)의 평택이전과 재편이 모두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일환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국 내 해외미군 기지이전 관련한 각종 보고서는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와 용산기지 이전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미 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동시에 추진되었다.

위성락 전 외통부 북미국장 역시 2006. 2. 22.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본인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회에 참여하는 동안 전략적 유연성은 FOTA의 한 부분으로서 기지이전 문제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 당시 우리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준수, 제3국과의 분쟁 불개입, 진정한 사전협의를 추진한 것도 이러한 전체적 맥락을 감안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3) 주한미군 재편 -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화

(1) 세계 최초의 ‘슈퍼여단’ 창설

2004년까지의 FOTA 합의에 따라 2005년 미국은 미2사단을 해외주둔 미군 최초로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사단'(UEX, Unit of Employment X)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미2사단 산하의 제1여단은 이미 기존 여단보다 2~3배 전력이 강화된 중무장한 '미래형전투여단'(UA, Unit of Action)으로의 재편을 완료하여 세계최초의 '슈퍼여단'으로 불리고 있다. 주한미군 재편은 이렇듯 미군의 군사혁신과 해외주둔기지재배치의 시범 케이스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미래형 사단으로 전환된 미2사단은 C4I 및 무인정찰기(UAV)를 비롯하여 최신예 에이브럼스(ABRMS) 탱크, M270A1 최신예 다연장로켓시스템을 갖춰 현재 보다 훨씬 강화된 '정밀타격능력'과 '확대된 전장과 원거리에서의 작전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래형 사단은 평시에는 1개의 여단만 보유하지만 유사시에는 하와이와 미 본토 등에서 한반도로 증강 투입되는 5개의 UA를 지휘하게 된다.

<표1> 주한미군 편제의 변화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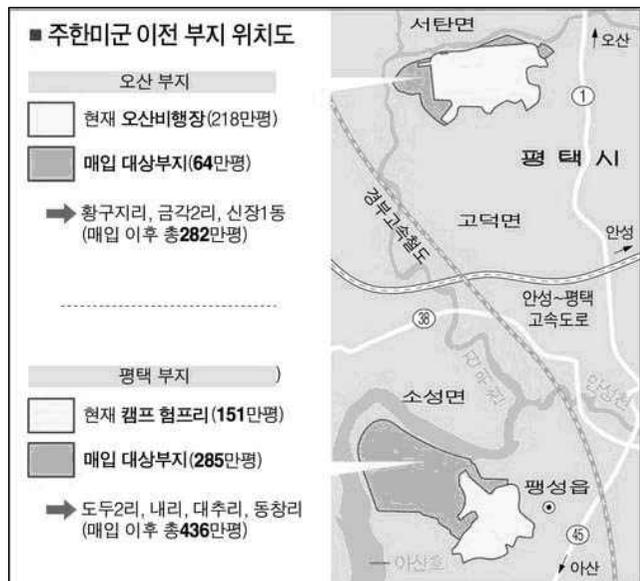
현 주한미군 편제	변환될 주한미군 편제	변환의 특징
미 8군	축소 혹은 해체 추진 중	지휘 사령부의 간소화
미 2사단	'미래형사단'(UEX:Unit of Employment X)	사단 군단 기능 통합
산하 여단	'미래형전투여단'(UA:Unit of Action)	신속기동 모듈군화

4)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1) 주한미군의 평택으로의 집중

미국은 주한미군을 2008년을 전후하여 평택과 대구·부산 등 2개의 허브기지, 경기북부의 연합훈련센터와 군산 공군기지 등 소수의 전진작전기지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이전하게 될 평택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등 용산기지의 사령부 외에 2사단 사령부와 예하 여단, 제1중여단전투팀(HBCT) 본부 등 주한 미 지상군 주력 전투부대가 모두 집결하게 된다.

평택에는 K-55 미 공군 기지와 한국 해군항이 위치해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평택은 기동력과 신속타격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구사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 것이다. 미군은 캠프 험프리기지의 활주로를 개선하여 미 수송 작전의 주력인 C-17 수송기가 직접 착륙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출 계획이다.

<표2>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부지의 변화

구분	기존	반환	신규	잔여
면적	7,320만평	5,167만평	362만평	2,515만평
기지 수	43개	27개		16개
훈련장 지역 수	15개	7개		8개
훈련장 수	52개	35개		17개

* 출처 : 국방부, 『2004 국방백서』, 2004. 12, 95쪽 및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 2006. 6, 70쪽 참조

<표3> 반환 및 신규 부지의 지역별·기지별 현황

구분	반환면적	신규제공			
		지역별 면적 기지별 면적	팽성 285만평	서탄 64만평	기타 13만평
용산기지	118만평	52만평	38만평	14만평	
미2사단	935만평	223만평	223만평		
LPP	4,114만평	87만평	24만평	50만평	포항 10만평, 김천 3만평

※ 출처 : 국무총리실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준비단, 『미군기지이전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06. 5, 2쪽 참조

(2) 주한미군 감축 - 2008년까지 2만 5천명으로 감축, 1만 5천여 명 선으로 감축될 가능성도

기지 재배치와 함께 한미양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 12,500명을 감축하여 25,000명을 남기기로 2004년도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사단 2여단은 이라크로 파병되었고 기갑여단이나 항공여단, 포병여단, 그리고 용산 기지의 일부 행정 병력도 감축되고 있다.

<표4> 주한미군 감축계획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2008년
감축병력	5,000명	3,000명	2,000명	2,500명
주요부대	·2여단 전투단 ·기타 지원병력	·육군 지원부대 ·공군 지원부대 ·기타 지원병력		·육군 지원부대 ·기타 지원병력

한미양국은 여기에 더하여 주한미군사령부·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 지휘구조의 재편·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럽스펠드 미국방장관 등 미군 최고위 당국자들은 최근 미지상군의 추가감축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 미지상군은 소규모의 지휘 사령부와 1천여 명의 증원지원여단만 남거나 3천명 규모의 순환배치여단이 추가로 남고 나머지는 모두 감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2010년대 전반기 즈음에는 해·공군 포함 총 12,000~15,0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3.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재배치의 문제점

1) 동북아시아 군사 갈등 고조 - 중국 포위를 위한 지역동맹 구도의 가시화, 중리의 반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중동에서 벵골만을 거쳐 동남아와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중국에 대한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하는 것을 겨냥하고 있다.

14-2-1의 전략의 4개 전쟁 역지 지역의 2개가 동북아, 동남아, 나머지 1개도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3개가 아시아권이다.

미국이 최근 진출한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원유-가스자원의 최대매장지이자 파이프라인의 길목이며, 이는 지역적으로 중국의 동, 남, 서남 경계에 해당한다. 미국은 전통적으

로 해양 전략을 지향하였으나, 탈냉전과 대테러 전쟁 이후 해양과 대륙 모두에서 구사회주의 국가이자 잠재적 패권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을 모두 포위하는 광범위한 영역을 지배하게 된 셈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 <2020년 세계정세보고서>2005에서는 앞으로 15년 뒤 중국과 인도의 성장 등으로 21세기는 아시아 국가들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15년 이내에 '중대국면'이 찾아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미-일 동맹관계의 급속한 발전이다. 국무부 차관인 아미티지의 보고서(2000)는 아시아에서 일본을 유럽의 영국과 같은 동반자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과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이 같은 대중국 포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지역동맹구도의 완결판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군사 협력의 강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러는 이같은 변화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택기지 이전협정이 비준된 후 중국과 러시아는 평택 맞은 편 산둥반도에서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중러 합동 군사훈련 실시함으로써 1960년대 중소이념분쟁 이후 최초로 군사훈련 재개했다.

2006년 3월 22일,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는 한미 양국이 1월 합의한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이 제3국을 대상으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는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한미간 합의에는 한국민의 동의 없이는 제3국에서 활동할 수 없다고 했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도 한국의 안보를 위한 쌍무적인 체제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전략적 유연성도) 쌍무적인 틀에서 행동하면 이해할 수 있다.(2006. 3. 22. 연합뉴스)"고 부연하였다. 이는 한국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인용,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경계심을 간접적으로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2)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의 공세화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동맹 역할의 세계적 확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미국 군사 전략의 다른 부분들을 놓칠 위험이 있다. 군은 미래의 위협에 대해 준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최우선과제는 현 전략의 실행이다.

즉 북한을 '주적'의 하나로 상정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현 군사전략 아

래에서 미군의 최대 임무는 그러한 전략 실행에 필요한 준비태세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2기 부시 행정부 '변형 외교'의 목표이고, '14-2-1 전략'이 타겟으로 잡고 있는 2개의 전장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미국 핵전략과 반확산 정책의 주요 목표이기도 하다.

(1) 한미전략기획지침 2002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 200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전략기획지침(자료 참조)' 문서이다.

9.11 직후인 2002년 11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이 서명한 이 문서는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킨다." "이 작전계획은 2003년 7월까지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전략기획지침' 4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및 최신화한다"며 작전계획의 목표를 북한군 격멸, 북한 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계획이 대북 공격용임을 명시하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대북 정밀타격용 '작계 5026'이 북한정권 제거 등 전면전을 위한 '작계 5027-04'와 북한 내부의 소요사태, 정권붕괴, 내전, 대규모 탈북 등 급변사태에 개입하기 위한 '개념계획 5029'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 세 가지 계획은 한미연합사 작계의 순환고리"라 지적하고 있다.

(2) 작전계획 5026의 변화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초정밀공습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작전계획 5026은 최근 변화되는 미국의 지상군 최소화와 첨단 정밀타격 작전개념에 가장 잘 부합하는 속전속격 계획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관련 전문 사이트인 'Global Security'가 소개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6에 의하면 북한 내 특정목표(Target List)를 파괴하기 위한 정밀유도폭탄, 특히 전천후 파괴력을 가진 합동직격탄(JDAMs)을 투하할 수 있는 F-15E, F-117, B-1B, B-2, B-52H 등 폭격기들이 약 700여개의 목표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토마호크 순양미사일 발사, 키티호크, 칼빈슨 등 항모전단 등의 입체적인 작전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심적인 부분은 타겟 리스트인데 대량살상무기 만을 제한적인 공격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지대공 미사일, 방공레이더, 그리고 지휘통제시설 등에 대한 확대공격의 경우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작전 계획 5027-04

작계 5027은 대체로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작계 5027의 2004년 버전인 '5027-04'에서 주목할 것은 '한반도 우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규정이다.

이전까지 5027이 적용되는 '우발'(contingency) 상황은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확고한 남침 징후가 포착되었을 때를 의미했다.

그러나 2002년의 전략기획지침이 가정하고 있는 '우발상황'은 부시 행정부 이후 미국이 북쪽을 단행하고 이에 대해 북한이 보복 공격에 나서는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주지하듯이 5026은 북쪽을 가정한 작전계획이다. 미국의 선제공격, 예방전쟁 개념 도입에 기초한 공격적 군사전략 아래서 작전계획 5026과 5027-04가 밀접한 연관 아래 작동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5>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현재(한미상호방위조약)	미래(조약상 근거?)	비고(논쟁점)
작전범위	대한민국 영토(제3조)	아시아·태평양, 전 세계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작전성격	침략을 부인·방어적(제1조)	예방선제공격 독트린·공격적	위헌(평화주의 위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 개념계획 5029-05 관련성
임무전환	대북역지	대북역지+역내외 분쟁 개입 - 한국군: 대북 방어 위주 - 주한미군: 지역 안정기여	대테러 전쟁에 한국연루 중미, 양안 갈등 한국연루 동맹이익의 비대칭
특성	지상군 위주 불박이 군대	해·공군 위주 첨단신속기동군	상호운용성 보장 요구 한미연합전력 증강 요구 '한미연합'전력의 유연성
기지	장기 주둔 훈련	원거리 투사 허브	분쟁개입 전초기지화

(4) 개념계획 5029-05

청와대가 주권침해, 위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진 ‘작전계획 5029-05’는 북한 내부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쿠데타 등에 의한 북한 내전 상황 시 국경 봉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시 구출작전,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시 군부대 임시 수용 후 정부 인계, ▲핵·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란군 탈취 시 특수부대 투입,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군사작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은 북한인권법, 북한자유법안, 대규모 탈북 난민사태를 대비한 다국적군의 모의 훈련(MPAT), 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북한 흔들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중단하고 ‘개념계획’으로 재작성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러나 미 합참의 군사용어사전에 따르면 개념계획도 ‘축약된 작전계획’일 뿐만 아니라, 개념계획과 작전계획의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4) 위험과 사실의 은폐 : 국민에게는 감추어진 ‘전략적 유연성’과 ‘기지재배치’의 실체

NSC와 협상실무대표인 외통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직결되어 있고 이른바 ‘지역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주한미군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내 위상,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재편의 소프트웨어, 주한미군 감축 및 기지이전은 그 하드웨어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 국민들에게는 주한미군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변했고,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란으로 그 하드웨어인 기지재배치 일정이 늦추어 질 것을 우려해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논의를 덮어버렸다.

(1) NSC 내부분서,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2005. 4. 5. 작성된 문서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단순한 주한미군 유출입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한국안보에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어 있다는 인식과 기조 하에 부처협 의 및 대통령 보고 실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NSC는 이어 “이 문제가 군사주권이 걸려 있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내용”이며,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직결되어 있고 이른바 ‘지역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단순히 주한미군의 출입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내위상, 한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NSC는 “당초 미측 요구대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당연히 전제되고 한·미 연합 지역 기동군 문제나 한국군의 지역 역할 문제가 이슈화 되는 건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라고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하에서도 주한미군의 전출입을 통제할 어떠한 장치도 만들지 못한 채 구속력이 떨어지는 사전협의제조차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것이다. 또한 NSC나 주무 협의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가 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되거나 이의 개정에 준하는 조치라는 점을 알고¹⁾서도 이에 준하는 절차, 예컨대 국회 비준 동의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재배치는 연관이 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04년 주한미군 기지재배치 협정 비준과정에서는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재배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었다.

NSC가 전략적 유연성 합의 직후 발표한 대국민 설명 자료(2006. 1. 31.)는 “지난 2003년 이래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이전에 관한 합의도출. 전략적 유연성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맹 조정의 난제 중 하나를 해결함으로써 앞으로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 즉 금번 합의는 한미동맹이 21세기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성락 전 외통부 북미국장 역시 2006. 2. 22. 프레시안 기고문에서 “본인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협의에 참여하는 동안 전략적 유연성은 FOTA의 한 부분으로서 기지이전 문제와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기지재배치 협의 과정이었던 1차 FOTA에서부터 이미 주한

1)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종석 NSC 사무차장, NSC 상임위 회의록, 2005. 12. 29)

미군의 지역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이 확인되어 결국 국민적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 합의 결과를 공개하는 시간차를 두었을 뿐이었다.

(3) 용산기지의 평택이전은 GPR과 관련이 없다?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세계군사변환 정책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계획 및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주장과는 달리 국방부도 용산기지 이전이 미국의 GPR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이 작성한 “용산기지 이전 합의서 및 LPP개정 협정 관련 Q&A 자료(2004. 7. 23)에 의하면 “용산기지를 오산·평택지역의 핵심통합기지로 이전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 계획의 일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04년 용산기지 이전 실무협상을 사실상 완료하고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작성된 문서로 이 문서에서 국방부는 “본 질의/답변서는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주장에 대한 해명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 거꾸로 된 논의 : 역할변경, 동맹 재정의 생략한 주한미군재편 논의

(1) 설계도 없이 집부터 짓나? 이상한 한미간 협상 방식

90년대 이래 미 일 동맹과 함께 한미동맹 정책 변화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 미군 역할 변경이 논의되는 경로와 방식은 매우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 재정의 1차 합의(1996) -> 역할 변경 합의(2004) -> 기지 이전 협정(2006) -> 동맹 2차 재정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기지 이전 협정(2004) -> 역할 변경 합의(2006) -> 동맹 재정의(1차, 2006)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경로는 말하자면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할만한 비상식적인 일이다.

평택에 제공할 새로운 기지에 무엇을 지을지, 어떻게 쓰이는 건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땅부터 내주고 2년이 지나서야 설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용문제에 대한 협상도 연관된다. 무엇을 지을지 알아야 그에 쓰일 비용이 계산되는 데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비용 부담은 한국 정부가 하기로 하고 이제

야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의 비상식적 협상태도는 몇 가지로 추측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경로의 문제점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둘째로 전단계의 내용(소프트웨어)을 밀실에서 합의한 채 마지막 단계인 기지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러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셋째로 정부가 적극적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논의 경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다. NSC가 바로 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합의하지 않은 채 뒤로 미루었다”는 주장으로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 이전이 무관하다는 주장의 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없다. 구체적이고도 물리적인 구속력을 갖는 기지이전문제를 합의해 준 후에 개념을 협의할 경우 한국 측이 아무런 협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협상 역시도 그렇게 귀결되었다.

(2) 국민 여론 따돌리기와 밀실협상

정부는 주한미군재배치를 용산기지 등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왔다.

한국정부는 협상 기간 내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가 전략적 유연성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주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거짓이라는 점이 곧 밝혀졌다.

정부의 국민여론 따돌리기는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국민의 88%가 전략적 유연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국민 대다수가 한반도를 심각한 위협에 내몰 수 있는 한미동맹의 중대한 재편에 대해 아무런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그 몸통인 주한미군 재배치 협정이 타결(2004)되고, 그 뒤에 슬그머니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옷을 입히는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따돌려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여부나 재배치된 미군의 동북아 및 세계 분쟁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필수적인 논쟁은 생략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이른바 미일 상호안보조약 상의 극동 조항’에 대한 입장 차가 공개적으로 논의되었고, 이 논의가 주일미군기지 재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미국이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사례는 미군기

지배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이 쌍방이 체결한 조약에 근거해서 협의되어야 할 성질의 의제이며 이에 대한 합의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상호적인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5.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협정의 재협상의 필요성

이렇듯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연결된 사안이며,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른 위협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평택기지 등이 한반도 방위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과 주민, 국회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 따라서 평택기지 이전 협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배되고 나아가 그 자체로 위헌이다. 무엇보다도 이 협정을 그대로 둘 경우, 한미동맹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익의 손실이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특히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이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 재배치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던 정부의 대국민 홍보 전략에 의해 가려져 왔다는데 주목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재배치 관련 협정 체결 및 한미동맹 재편과정에 대해 철저한 재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보론 / 주일미군 재배치,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미국과 일본이 3년 반 동안 협의 끝에 지난 5월 1일 주일미군 재편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미-일 동맹의 변화와 이를 위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일체화' 촉진이다.

주 내용으로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2008년까지 자마(座間)기지로 옮기되 통합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를 2010년까지 도쿄(東京)에 있는 요코다(横田) 미군기지로 옮겨 미사일방어(MD) 사령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아쓰기(厚木)기지의 항모함재기는 2014년까지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기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던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 문제는 "2014년 완성을 목표"로 슈와브 기지 연안에 건설하기로 하고 1천800m 길이의 V자형 활주로 2개를 갖춘 비행장을 건설하는 데 환경영향평가 기간 3년, 공사기간 5년이 걸릴 예정이다. 오키나와 기지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해병대 8천명이 괌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우선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의 자마기지 이전 문제를 보자. 자마기지에 극동~중아시아~중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른바 '불안정한 호')을 관할하는 광역사령부(UFY)를 설치하고자 했던 미국 측의 계획은 '주일미군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주일미군 재편 '최종 합의'에 따르면, 자마의 미군사령부는 광역사령부(UFY)보다 한 단계 아래인 거점사령부(UFX)가 된다. 그 역할도 육·해·공군과 해병대 4군의 통합 지휘, 그리고 일본 '유사사태'와 극동 유사시에 대한 대응이다.

이것은 자마기지의 광역사령부 재편이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 조항'과 충돌하고, 주일미군의 해외 출동을 기정사실화할 것이며, 기지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본 국내의 극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미 육군 제1군단이 관할하는 범위가 중아시아와 중동까지 이르기 때문에 미-일 안보조약에서 규정한 '극동'(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극동은

필리핀 이북까지임)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한 헌법 9조와의 충돌 문제가 심화돼 극심한 안보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를 놓고 보면 주일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기지 재편 협상 과정에서 제한을 받게 된 것은 분명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찌감치 국회와 국민 몰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기반 한 기지 재편에 우선적으로 합의를 해놓고, 결정된 시간표에 따라 기지 이전을 강행하는가 하면 무기 및 군구조의 변화 등 각 세부 영역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였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정부 스스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일미군기지 재편안이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제출하였고, 중앙정부도 강압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야마구치현에 있는 이와쿠니시는 지난 3월 12일 주민투표에서 아쓰키 기지에 있는 항공모함 탑재기 부대를 이와쿠니에 있는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기지 재편안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89%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투표가 중앙정부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마구치현의 현지사와 이와쿠니시에 인접한 히로시마현 현지사까지 나서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주일미군기지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쿠니시의 주민투표 결과는 만만치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지자체를 설득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고 하고,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질리도록 들었다”(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중앙정부는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기지이전을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에서처럼 무지막지한 폭력을 쓰는 경우가 없다.



1997년 일미간 합의된 헤노코 비행장 건설안 - 해상안



2006년 수정합의된 헤노코 비행장 건설안 - 연안안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너무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점이다.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대하여 미 국무부가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평가한 것이나,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를 군경과 용역을 총동원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기지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과 우리가 너무도 다른 점이다.

세 번째로, 주일미군기지의 75%이상이 모여 있어 주일미군재편 협상에서도 최대의 현안이 되었던 오키나와의 주일미군기지 재편이 ‘최종합의’에 따라 순탄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도심내 위치한 후텐마 비행장의 이전 문제이다. 1997년 SACO 합의에 따라 후텐마 비행장은 반환하고 대신 헤노코 앞바다에 해상 비행장을 건설하기로 일미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신기지 건설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일본 정부의 지질조사를 해상시위와 천막농성을 통해 저지하는 등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후텐마비행장이 있는 기노완시의 시장도 오키나와 현내(縣內) 이전반대를 분명히 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상안을 포기하고 캠프 슈와브 내 비행장 건설안인 육상안을 미측에 제시하였고 재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캠프 슈와브와 해상을 결친 ‘연안’안이 합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헤노코 비행장 건설은 낡은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가 아닌 오키나와 미해병대의 전력 강화를 위한 신기지 건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론 / 한미FTA 저지투쟁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투쟁은 ‘한 몸’이다

2006년 한국사회 최대의 쟁점은 한미관계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군사동맹이 한 축이고 한미 FTA로 대표되는 경제동맹이 또 하나의 축이다. 하지만 이 둘은 상호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 직후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규정하고, “FTA 협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선언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한미 FTA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지 않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5년 11월, 한미정상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또 이 선언에 따라 2006년 1월 19일에 열린 한미 외무부 장관회담에서 발표한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양자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한미동맹 문제를 다루는 양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합의한 선언과 성명에 한미 FTA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최근의 진전’이란 한미 FTA 협상 개시 합의를 의미함)은 한미 FTA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포괄동맹화(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군사·정치·경제·문화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동맹)의 맥락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

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중남미의 5개국 등 15개국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한국에 비견할 만한(그러나 더 작은) 경제규모를 지닌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 호주 정도에 불과하며, 다른 나라들은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파나마, 모로코, 바레인 등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경제소국들이다. 이는 미국식 FTA가 단지 경제적인 협정일 뿐 아니라 미국의 지정학적인 패권 확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군사정치적 협정임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 개국 중 한국을 파트너로 뽑았다는 건 동북아에서 지주국가(stake state)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것 같다.”는 한국의 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한미 FTA가 한국을 미국의 동아시아 ‘말뚝’(stake)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동아시아를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공략하는 데 필요한 전진기지로 한국을 택했다는 명확한 의도를 잘 설명해 주는 의미심장한 언급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한미 FTA가 부시 행정부가 공표했듯이 경제, 정치, 외교안보, 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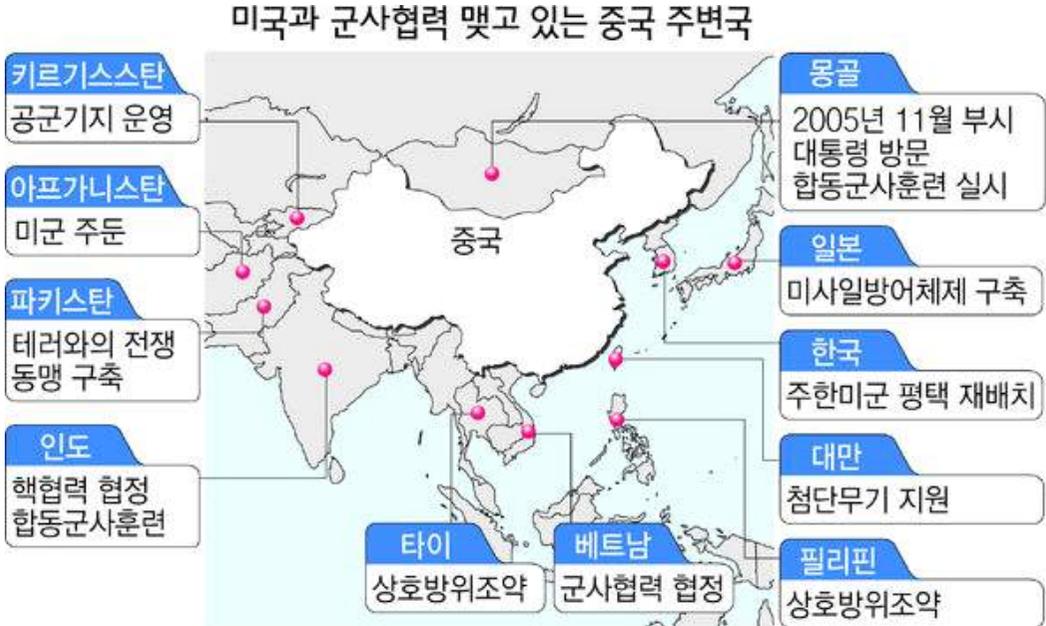
미국이 한미 FTA 추진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에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데만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미국은 한국 시장을 확고히 장악함으로써 2004년 이래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최대 방문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여 중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또는 한국의 친중국화를 제어하는 한편,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 FTA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2008년 올림픽 이전에 확실하게 구축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를 ‘경제동맹’이라 한다면 그 실제적 의미는 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이탈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시장과 긴밀히 결합함으로써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패권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미 FTA와, 평택문제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 동맹의 침략동맹화가 만나게 된다.

미국은 냉전 해소 이후 자신의 세계전략을 유럽 중시전략에서 아시아 중시전략으로 바꿨다. 미국은 최대의 잠재적국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장차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록 하는 ‘단념’ 또는 ‘봉쇄’전략 구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중동에서 벵골만을 거쳐 동남아와 동북아에 이르는 ‘불안정한 활꼴’ 모양의 거대한 포위망을 구축해 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6. 8. 7.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의 핵심적 목표는 바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막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중국과 대만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미동맹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형 군대에서 공격형 신속기동군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한국이 그 전초기지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양국 정상이 경주선언에서 “한미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 데 동의”한 것은 이제 한미동맹이 더 이상 ‘방어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침략적 포괄동맹’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제까지의 미국의 ‘군사적 대미의존국’에서 ‘동북아 패권의 하위파트너’로 재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보면 2006년 1월 19일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발표와 2월 2일의 한미 FTA 협상 개시선언이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한미 FTA가

경제협정이면서도 동시에 군사안보적 협정이라고 한미 양국 정부가 공표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 한국 정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의 말뚝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 FTA 추진과 한미 군사동맹의 재편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미국은 각 대륙의 군사정치적 요충지에 FTA를 체결하면서 정치군사적 동맹(예속) 체제 강화와 FTA를 통한 경제 동맹(예속)을 결합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역시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충실히 조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 FTA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을 완결 짓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및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구도에 남한을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 하위동맹체제 아래서 남한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군사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구상 아래, 미국의 패권 전략에 적극 부응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한편으로 평택 기지확장과 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두 측면이다.

이런 점에서 한미 FTA 저지투쟁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두 투쟁은 우리나라의 정치·경제·군사적 주권을 지키는 투쟁에서 만나야 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따라서 한미 FTA 저지투쟁과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에 앞장서는 이들은 이 두 투쟁이 본질적으로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자가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기사

[확장된 캠프 험프리 '청사진' 첫 공개]
평택기지, 주한미군 허브로 개발²⁾

[조선일보 2006. 4. 12]

한미연합사·미군사령부·미2사단 등 총집결
451만평 규모… 인원 4만 명 이상으로 늘어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주한미군이 2008년 12월까지 용산기지 등이 옮겨갈 평택 기지(캠프 험프리)에 한미연합사령부·유엔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등 한·미 양국군의 수뇌부 외에 미 2사단 사령부와 예하 여단 본부 등 야전부대 지휘부까지 옮길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캠프 험프리는 오산기지를 능가하는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 역할을 할 전망이다.

◆ 6400억원 들여 20여개 건물 신축중=스티븐 M 앤더슨 주한미군 기지이전 선발단장(육군준장)은 11일 “한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평택기지 마스터플랜(청사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앤더슨 준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166만평 규모인 캠프 험프리는 기존 부지에 대추리·도두리 등 285만평을 추가매입, 451만평으로 확대된다. 공군기지를 제외하고 해외 주둔 미 지상군 기지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된다.

기지 내에서 활동하는 인원도 현재 9000여명에서 2008년말까지 4만453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엔 미군 1만4491명, 미군 가족 1만1075명, 미군 군속 5420명, 카투사 1600명, 한국군(한미연합사 근무) 800명이 포함돼 있다.

2008년 12월까지 새 기지 조성 계획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험프리에는 주한미군 핵심 지휘부가 집결,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중심축)’ 미군 기지가 된다.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미 2사단 사령부, 제1중(重)여단전투팀(HBCT) 본부 등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부가 모두 험프리로 옮겨 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항공 수송,

2) 평택에 확장될 캠프 험프리 기지에 대한 청사진이 유일하게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 공개되었다. 당시 이 내용은 주한미군측에서 조선일보에만 제공하였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의 기회를 차단하여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통신, 의무, 헌병, 정보수집 등 지원 기지에서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한강 이북에서 2사단 예하부대 통·폐합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미 1700여 명의 2사단 병력이 캠프 험프리에 와 있는 상태다. 또 종전엔 UH-60, CH-47 등 수송용 헬기가 주력이었으나 최근 AH-64D '아파치 롱보' 공격용헬기 1개 대대(24대)가 배치돼 공격력도 크게 강화됐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등 군 지휘부 건물 계획도 처음 공개됐다. 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등은 전통 한국식 기와지붕의 건물에 함께 자리 잡게 되며, 미 8군사령부, 2사단 사령부 건물은 별도로 만들어진다. 특히 용산기지 지하 병커 'CC 서울'과 같은 성격의 지하 3층짜리 지휘통제용 병커도 건설된다. 여기엔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무인항공기 등 각종 정보수집 수단으로부터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한·미 양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첨단 지휘통제 장비가 들어선다.

기지이전 목표시한이 2년7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캠프 험프리는 20여개 동(棟)의 건물이 신축되는 등 부산한 모습이다. 8~13층짜리 최신형 막사도 여러 개가 이미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캠프 험프리에서 진행 중인 공사 규모는 총 6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미군 측은 밝혔다. 미군 관계자는 "현재 험프리는 미 본토를 제외하곤 해외 주둔 미 육군기지 중 가장 혼잡한 곳이 됐다"며 "이전 일정이 촉박하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8년 말까지의 이전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5개 구역으로 나눠 기지 건설=평택기지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총 5개 구역으로 나눠 평택기지를 꾸밀 계획이다.



1구역은 기존 캠프 험프리 기지를 활용, 항공 작전과 우편물 취급, 각종 여가시설 등이 자리 잡는다. 2구역은 초·중·고교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센터, 카투사 및 부사관 훈련센터 등 훈련단지,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이, 3구역은 18홀의 골프장과 군인가족 주거시설, 산책로 등으로 구성된다. 미군 가족 등을 위한 초등학교는 3개가, 중·고교는 각 1개씩 건설된다.

4구역은 동두천에서 옮겨올 1중여단전투팀 본부와 막사 등 각종 시설, 철로 등이 자리 잡는다. 1중여단전투팀은 2사단의 핵심 전투부대로 전차, 보병전투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화력이 강화된 첨단 전투부대로 개편됐으며, 총 6개 대대로 구성돼 있다. 철로와 철

교는 평택기지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과 장비가 한강 이북 훈련장으로 이동해 훈련을 하기 위해 신설된다. 앤더슨 준장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을 예방하고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제기를 막기 위해서도 철로를 통한 수송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5구역은 소화기(小火器) 훈련장과 1중여단전투팀 수송대 등으로 구성된다. 평택기지 훈련장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소총, 기관총, M-203 유탄발사기 등 소화기만 사용하기로 했다. 구경 12.7mm 이상의 중화기, 전차, 자주포 등의 훈련은 모두 한강 이북지역 훈련장에서 이뤄지게 된다. 평택기지에는 1중여단전투팀 외에도 정보, 항공 등 9개 대대 규모의 수송대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총 15개 대대 규모의 수송대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2부

제5장 미군재배치협정의 문제점 :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중심으로

1.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개요

용산기지 이전협정은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 : UA)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과,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적,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 : IA)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 합의서」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괄협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사, 주한미군사를 평택지역으로 이전, 필요한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
- 유엔사 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 이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양해 하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완료
- 대한민국은 토지, 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
- 소요시설은 본부, 행정, 의료, 지원 시설 및 삶의 질 시설, 주한미군사 인원과 가족을 위한 숙소,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계(C4I)의 기반시설 등
- 한국은 미 국방부가 용산기지 안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대체 주택을 제공하고 그 외 소요주택은 미국이 임차 또는 리스한다. 시설소요는 미국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야

함.

-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위해 평택지역 52만평 이내의 부지를 공여

2. 용산협정의 위헌성과 골육성

1) 미국의 필요 따른 이전 불구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 부담은 골육적

용산기지 이전이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합중국 군대를 핵심권역으로 통합”한다는 협정 전문, ‘시설수준의 제고’와 그에 따라 첨단 C4I구축 및 대규모 미군요원 가족숙소 등을 요구하는 시설의 내용, 노대통령 등 한미당국자의 발언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사실이다. 이를 한사코 부인해왔던 정부의 협상 관계자들도 최근에는 그 연관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이전을 먼저 요구한 쪽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 90년 당시 우리 정부의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부담원칙 관철’ 방침을 정했던 점 ▲ 미국요구에 따른 캠프 님블과 캠프 홀링워터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사례 ▲ NATO의 독일 라인마인 미공군기지 이전비용 일부 부담 사례 ▲ 미국 요구에 따른 유엔사·한미연합사 이전비용의 한국 부담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 용산기지이전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

협정에는 세부내역은 물론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용의 상한선 규정도 없다. 또한 정부 협상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협정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정도로 모호한 규정들이 즐비하다.

비용통제장치도 확실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가 주장하는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른 협정 이행’이라는 협정 조항이나, 확실한 거부권을 의미한다는 ‘유효성 확인’(Validate), 현물제공(In-Kind)방식도 확실한 비용통제 장치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협정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초종합계획(IMP)을 미국이 작성했고, 협정문도 미국측 초안에 기초하였으며, 시설종합계획(MP)도 미국이 작성하며,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방식에 따른 사업진행도 국내업체의 경험과 능력이 없

다는 점에서 사업 전반을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협정에 총액 규정도 없고, 모호한 표현들이 많고 비용통제장치도 불확실하며 미국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용산협정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3) 90년 합의보다도 개악되고, 외국 사례에 비해 불평등한 용산협정

90년 합의서는 시설수준의 '저하 금지'(no degradation)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의 협정안은 시설수준의 '유지 또는 제고'(maintained or enhanced)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90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행정 및 의료시설,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 항목 등이 추가되었다. 또한 원래 군사시설이 아니라서 통상적인 기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반가족용 숙소 부지 20만평까지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이전비용은 90년 당시 미측이 제시했던 17억 달러에서 39억 달러(한국 정부 추산)로 늘어났으며, 대체부지는 26만 8천 평에서 52만평으로 늘어났다.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미국 주도 하에 시설수준을 향상시켜 In-Kind(현물제공)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사업의 전권을 그 나라들이 행사하여 기존수준으로 Turn-Key(완제품 제공)방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 우리 경우와는 달리 이사 비용이나 기타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 독일의 경우 이전비용의 일부(21.6%)를 NATO에 부담시킨 사례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일본, 독일의 경우 한국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그 나라들은 지자체나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였다.

<표6> '90년 합의보다 개악된 '04년 용산협정

구분	'90년 합의(MOA/MOU)	'04년 합의(UA/IA)
이전비용	17억 달러	39억 달러(2004년 당시 정부추산)
대체부지	26만8천 평	52만평
이전의 성격과 시설 수준	기존수준 유지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으로 시설수준 향상
추가시설제공	C4I시설, 행정, 의료시설, 임대주택 제공 없음	C4I시설, 행정, 의료시설, 임대주택 제공
기타비용	없음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 제공

<표7> 독일 라인마인기지이전협정과 비교해 본 용산협정의 불평등성

구분	용산기지	독일 라인마인기지
이전배경	전략적 유연성과 GPR	라인마인 경제 발달과 공항기능 확장
사업주체 및 비토권	한미공동 사업추진 비토권 없음	독일당국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턴키방식) 민간과 지방정부 참여보장
비용명시 여부	전혀 없음	총액뿐만 아니라 세부내역까지 명시
사용자의 비용 부담	미국 부담 전혀 없음	NATO에 비용분담 요구, 실제로 부담
시설수준	‘임무와 기능’이 적정한 시설	기준수준(반사규칙)
건축기준	미 국방부 기준	독일 기준
환경오염 정화	급박하고 실질적 위험 치유, 강제조항 없음	정화 대상과 범위 구체적

4) 용산협정은 국가주권 및 국회의 권능을 훼손한 위헌·불법문서

한미양국은 세부내역은 물론 이전비용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수준의 제고’, ‘삶의 질’ 등 모호한 표현이 즐비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 동의를 거치고, 이행합의서(IA) 등 나머지 문서는 ‘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가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관련된 사업의 전권도 SOFA 산하기구에 위임하도록 하였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주한미군의 성격변화와 밀접히 연관된 용산기지 이전문제에 관해 포괄적이고 모호한 협상안을 타결시켜 준 국회 비준동의과정은 한마디로 SOFA 기구의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였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정부 협상관계자들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회피하는 IA가 위헌이라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서명 당시까지도 SOFA합동위 문서로 고집하다가 결국은 IA를 조약과 SOFA합동위 문서를 겸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SOFA합동위원회 문서형식의 IA는 위헌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과 SOFA 합동위원회 문서를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를 무리하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형적인 것이었다. 하나의 문서가 국가간의 조약과 ‘협의기구’

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 문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문서는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다.

IA에서는 당시 함께 국회에 상정되었던 LPP개정협정에서 명백히 미국부담으로 명시하고 있는 캠프 그레이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비준동의도 받지 않는 IA가 LPP개정협정을 새로이 개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자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협상단이 우리 법체계에 무시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앞장섰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 미국이 부담하던 가족주택 임대료도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

평택기지에 들어설 미군가족주택의 임대료가 “미국의 비용으로 임차 또는 리스”한다는 용산협정의 규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한측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폭로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협정의) 문구 표현은 ‘가족주택은 임대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문장만 포함시키고, (방위비분담으로 지급한다는) 위 개념은 합의의사록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문서로 교환”할 계획을 꾸민 것으로 드러난다. 위 문서에는 “이렇게 제안하는 이유는, 방위비분담금이 국민관심사가 되고, 정치쟁점화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은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추진하되, 임대료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한미양국의 공식적 합의와는 달리 미군가족주택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마치 미국이 부담하는 것처럼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국민을 기만한 것은 용산기지 이전협상이 백지수표를 주는 굴욕협상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전에도 이와 똑같은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다.

국방부는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국회비준동의 과정에서 한미간 비용분담 비율이 45:55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미국 측 자료에 의해 분담율이 실제로는 87:13이었음이 밝혀졌다. 그 비밀은 국방부가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산했던 것이다.

국방부는 또 2004년 6월에 완공된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용산기지 내 초호화 아파트 건 축비용도 미국이 부담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비용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방위비분담금은 우리가 미국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우리 돈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여 국민을 경악시킨 바 있다.

2007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임대료 지불을 준비하고 있음을 예견케 한다.

국방부가 제259회 임시국회 국방위(06. 4. 4)에 제출한 <주요현안 참고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재배치가 ‘08년까지 진행될 것을 감안하여, ‘08년까지는 현행 방식 유지”하되, “‘09년 이후부터는 일본, 독일 등 타국의 방위비분담 방식을 연구하여 발전된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주택임대료가 2009년부터 지불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발전된 방안을 적용”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여 주택임대료를 지불하려는 포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군인가족용 숙소 부지 20만평 불법·부당 제공

군인가족용 숙소 부지 20만평은 원래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기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안전 등을 이유로 “가족주택이 기지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며, SOFA 지위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다가 아예 기지면적에 포함시키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즉,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부지를 무상 제공했고, SOFA 지위까지 부여한 것이다. 밥만 퍼준 것이 아니라 술단지까지 통째로 미국에 안겨 준 꼴이 된 것이다.

정부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미국 측이 (가족주택부지 20만평을) 기존기지에 붙여 조성하고 기지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기지 내에 편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3. 협정 이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가적 문제

1) 천문학적 환경정화 비용도 한국부담

협정을 추진할 당시 정부는 환경조항을 신설하여 미국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협상의 커다란 성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그 한계와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 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 시 우리 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2003. 11. 18)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정은 비준되었으며, 그 이후 국방부는 ‘통상 반환 12개월 이전에 환경분과위원회 과제로 상정하여 환경오염조사 후 미측 비용으로 오염 치유후 반환’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국방부 홍보관리관실, 2005.10.11)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당시 환경오염 비용 부담 우려에 대한 지적이 적확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측이 과도한 기준과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벨 주한미군 사령관, 2006.4.10)이라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으며, 예상되는 정화비용 5000억 원 중 20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하였다.

이에 대하여 협상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우리가 원하는



최근 7년간 용산기지에서 확인된 오염발생현황

수준은 아니지만 (미국이) 전례 없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윤광웅 장관, 국회 국방위 답변, 2006. 2. 10)는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

결국 7월 14일, 9차 SPI(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측이 치유하기로 한 8개 항목에는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양 오염 치유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아 5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대부분을 우리 측이 부담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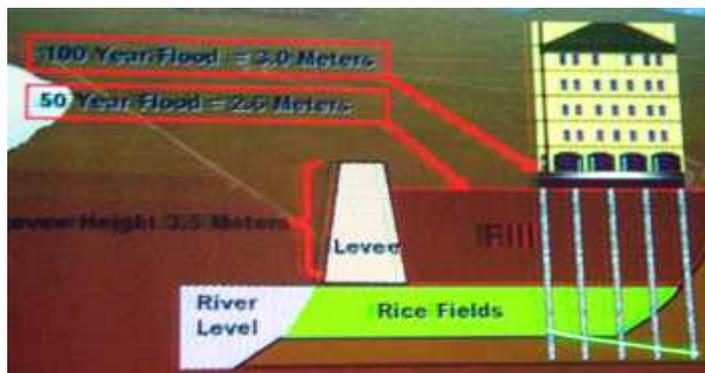
미국 측이 반환을 통보한 기지 중 매향리 사격장의 경우에는 치유 8개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불발탄 제거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반환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15개 기지 외에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3개 반환예정기지에 대한 경비, 관리 임무를 떠맡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 성토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과 환경파괴

미국 측은 기지이전이 본격 추진되자, 확장되는 팽성지역 부지의 지대가 낮아 홍수의 우려가 있다며 연병장은 2.6m, 건물부지는 3.3m 높이로 성토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로 추가적 비용과 엄청난 환경파괴를 동반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토지 성토에는 5천~6천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85만평을 연병장 수준인 2.6m 높이로 일괄 성토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3천9백만 톤(15톤 트럭 260만대 분)의 점질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50m 높이의 야산 180개를 모두 깎아 투입하는 제약적 수준의 환경파괴가 동반되며, 토사 운반과정에서 교통 대란과 도로 파괴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이 제시하고 있는 성토 규모

3) 협상 참가자와 PM사업 수주 예상업체의 부도덕성

미군재배치협상에 참가했던 핵심실무자 중 한 사람인 이 모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이 전역 바로 다음날인 2005년 5월 1일, 미군재배치사업의 관리사업(PM)을 수주하려는 헬리버튼 자회사 KBR한국지사에 취업했다. 심판이 갑자기 특정팀 선수로 옷을 갈아입은 것이다. 이는 공직자 윤리법 취지를 정면으로 어긴 것으로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KBR은 2005년 5월 9일, 한국의 독보적인 공기법인 한국전력기술(주)(KOPEC)과 PM사업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이는 한국업체와 외국업체간 컨소시엄 구성이 업체선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기술양해각서가 발표되기 2개월 전의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모 전 대미사업부장에 대한 군사기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이 회사는 PM사업 수주가 유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M사업비용도 당초에는 1,93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면서 상당부분 감액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PM사업의 중요성에 있다. PM사업이란 비용문제를 포함한 미군재배치사업 전반을 사실상 총괄 관리하는 일이다. 국내 업체나 공무원은 미군 관련 대규모 건설사업을 PM방식으로 수행한 경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업체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KBR은 익히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 군납사업 등에서 과다비용청구 등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다. KBR은 이라크에서 참수당한 고 김선일 씨가 일하던 회사와도 관련 있는 업체다.

또 PM업체는 건설사업 경험 때문에 이후 평택기지의 군납사업 수주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사업추진의 전력이 있는 업체가 PM사업과 이후 군납사업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4. 국회는 청문회와 재협상 추진으로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 당시 국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물론 정부와 국회 일각(현 한명숙 총리도 당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공청회에서 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에서조차 위헌성과 굴욕성이 빗발치듯 제기된 미군재배치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포기하였다.

당시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바 있으나 청문회는 아직까지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추가감축 문제, 비용 및 환경문제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고, 주민이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회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의 중단과 전면 재협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보론 /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 얼마나 들까?

1.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미군 재배치 직접비용

1) 한미당국이 주장하는 재배치 직접비용 : “그 때 그 때 달라요!”

2004년 국방부가 제출한 기지이전 비용부담 주체와 예산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기지이전 비용부담 주체 및 내용>

용산기지이전	LPP	미 2사단 재배치
-한국 측이 부지제공(52만평) 및 시설건설 비용부담 (30~40억 달러 추산)	- 한국측이 부지제공(87만평), 한미 양측이 각각 이전을 요구한 기지건설비용 부담 (한국: 9,337억원, 미국: 1조 8,400억원)	- 한국 : 소요부지 제공(223만 평) - 미국 : 대체시설 건설비용 일체

* 자료: 국방부(2004)

<세입·세출 예산 판단>

(단위: 억원)

구분	세입	세출			과부족	차입금 이자	
		소계	부지매입	건설비			
재 배 치	소계	2조 5,124	1조 5,132	8,185	6,947	9,992	채권이자 9,171 총과부족 - 651
	LPP	1조 7,743	9,337	2,517	6,820	+ 8,406	
	미2사단	7,381	5,795	5,668	127(환경)	+ 1,586	
용산기지	3조 8,099	3조 9,571	1,919	3조 7,652	- 1,472		
총 계	6조 3,223	5조 4,703	1조 104	4조 4,599	+ 8,520		

* 자료: 국방부(2004. 1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국방부가 판단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총세입이 6조 3,223억원, 총세출은 5조 4,703억원으로 8,520억원 세입초과가 발생하며, '선 기지이전 후 반환부지 매각'에 따라 차입금 이자 9,171억원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651억원 세입부족이 예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추산되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내에서조차 제각각이다. 정확한 비용은 알 수 없으나 미군기지이전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와 미군 장성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2004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이전비용으로 총 30~40억 달러 소요될 것"
- 2004년 GAO보고서, "미군재배치 비용으로 미국 측 2.12억 달러, 한국 정부 47억 달러 이상 부담 기대"
- 2005년 한국 국방부,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 2사단의 오산·평택으로의 재배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른 기지통합에 대략 5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2005년 5월 미 '해외주둔위원회(Overseas Basing Commission)' 보고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미국 측 부담 비용은 26억 달러(2조7000억원 내외)"
- 2005년 3월,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군기지이전비용으로 80억 달러 소요될 것"이라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그 내역은 ▲ 한국 정부 부담 : 53%(42.4억 달러), ▲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20%(16억 달러),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21%(16.8억 달러), ▲ 미군 시설예산 6%(4.8억 달러)로 분석함. 즉, 미국 부담은 전체 소요 예산의 6%인 4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임.
-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용산기지 이전비용이 50억~55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판단
- 2006년 3월 윌리엄 펠런 미 태평양군 사령관, "한국정부가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안보정책구상(SPI)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고
- 2006년 3월 한국 국방부, "미국 쪽이 용산기지 이전 및 2사단,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비용 50억~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금액 16억8천만 달러(2004~2008)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추정
- 2006년 3월 미군기지이전사업관련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입찰참가자격요청서(RFQ)

"용산기지이전사업의 경우 총 35억~45억 달러 소요 예상, 미 2사단 재배치 및 LPP 경우 35억~45억 달러 달할 것, 본 사업은 한국이 자금을 부담하여 소요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용산기지이전사업 및 LPP 사업, 미 측이 자금을 부담하는 2사단 재배치, LPP 사업으로 구분된다."

2) 한측, 68억 달러 부담 가능성

미군 재배치 비용과 관련한 위의 언급들 중 현재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2006년 3월, 팰런 태평양 사령관의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그 근거는 발언자가 미군 최고위 사령관이고, 발언 장소가 미 의회로서 발언 성격이 공식적이며, 발언 내용이 한국이 68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약속했다"고 확정적인 어투를 사용했고, 발언 시점이 비교적 최근으로서 이 때는 시설종합계획(MP)이 사실상 작성되어 한미양국 사이에 실무검토를 하고 있는 때라는 점 등이다.

2. 환경복구 등 추가 비용

1) 환경오염 정화비용 최소 7천억 원 가능성

황규식 국방차관은 지난 1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에 3000~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다른 정부 관계자와 여당 의원은 지난 2월,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9차 한미동맹 안보정책 구상(SPI)회의 직후인 7월 하순, 환경부는 29개 반환기지 중 오염된 26개 기지의 환경치유 비용으로 '나' 기준 적용 시 277억원, '가' 기준 적용 시 1,205억 원을 예상했으며, 국방부는 "한국의 토양환경보존법상 '나' 지역 기준으로 치유하는데 273.8억원, '가'지역으로 치유하는데 1,1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단,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은 오염된 지하수량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추산액은 지하수 오염 치유비용이 제외된 데다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환경전문가들은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지만 26개 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에만 최소 3,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확인될 용산 등 나머지 30개 반환기지의 정화비용을 위와 같은 3,500억원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으로 최소 총7,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 부지 성토비용 5천~6천억 원 추산

또한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이 옮겨갈 평택기지의 성토비용도 문제이다. 지난 해 11월 미군 측은 사용할 수 있을만한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한미 합의사항이라면서 평택기지 부지의 성토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측은 미 2사단이 이전할 부지는 미국 정부 대신 구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측이 요구하고 있는 '기지로 사용할만한 조건' 충족을 한국 정부가 수용한다면 성토작업에 드는 비용 모두를 우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5000억-6000억원을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3) 용산기지 대체 주택임대료만 매년 142억원

우리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주택임대료는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임대주택(984세대)만 따져도 매년 1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984세대 × 12개월 × 120만원 = 141억 6960만원

여기에 LPP협정에 따른 2사단 대체 임대주택의 임대료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하게 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3. 미군 재배치 관련 간접비용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법이 제정되었다.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기지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팽성읍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이주정착 지원금, 생활안정 지원금, 상업용지 분양, 농지대토 등의 이주대책사업과 기지이전으로 불편을 감수하게 될 평택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교육재정지원 특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평택항 투자확대 등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그 가운데 금액이 '딱 떨어지는' 항목만 살펴보면 지자체에 지원하는 이주민 관련 특별지원금에 300억원, 교육재정 지원에 총 497억원,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에 1년에 약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황일도, 신동아, 2005. 8) 당시 정장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총 9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 소요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평택지역 지원 사업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그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수립한 ‘평택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교육·연구단지 건설, 첨단농업시범단지 개발, 평택호 관광지 개발, 기지 주변지역 지원 등 4개 특별지원사업군에 총 14조1313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비가 3조786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들 사업의 상당부분은 미군기지 이전과 상관없이 이전부터 계획돼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과는 무관하게 새로 지원하도록 규정된 총 1조4374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부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래서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평택지원특별법과 지역개발계획 예산 등의 간접비용 추산액은 약 2조 3,770억원에 이른다.

4. 미군 재배치 관련 총비용 11조원 가능성

결국, 현재 시점에서 미군재배치 관련 직간접 총비용은 약 11조원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액수는 각종 정보가 차단된 조건에서 개략적으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산액을 밝히는 것은 미군재배치 비용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지를 제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문 해소에 기여하고, 정부가 투명하게 관련 내역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군 재배치 총비용 추산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용산, LPP, 2사단 재배치 비용, 이자비용 : 68억 달러(6조8천억 원)
- 환경오염 정화비용 : 7천억 원
- 부지 성토비용 : 5천~6천억 원
- 주택임대료 : 매년 142억원+a
- 간접비용 : 2조3770억원
- 총계 : 10조3770억~10조4770억+매년 142억원+a

보론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거짓과 진실

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한미간 합의 결과

한미 양국은 지난 2000년 '주한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계기로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됨에 따라 2001년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제정하고, 그 이행을 위해 구체적 이행 합의서를 마련하였다. 미군기지과 관련된 오염사고 처리 절차에 관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를 마련하였고, 미군기지를 반환하거나 새롭게 공여할 때 환경오염조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2003, 이하 부속서A)를 마련하였다. 부속서A는 반환 미군기지에서 오염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군이 환경정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정화 기준을 정하지 않아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협상을 벌여 왔다.

2006년 7월 14일, 9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미측이 유류저장탱크와 사격장내 불발탄 제거 등 8개 항목에 대해 치유하기로 한 15개 기지는 반환받고 나머지 기지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주한미군은 매향리를 포함해 19개 미군기지의 관리권을 한국으로 넘겼다. 국방부 등은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미흡하나마 다른 국가에 비해 진전된 결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결과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주장하던 오염자 부담원칙과 국내법 존중은 물거품이 되었고 미국이 주장하는 환경정화 계획을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의 정화는 실제로 정화 효과가 없는 허구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매각 또는 이양하기 전에 국내 기준치에 맞춰 정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일부 불발탄만 제거했다는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까지 반환받아 안보 동맹을 내세우는 국방부의 입

김에 국내 환경주권이 무너진 것이 확인된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한미간 합의가 발표된 지 열흘 후인 24일, 국회에 보고된 29개 반환 대상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던 환경부의 첫 공식 자료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부속서A'에 명시된 'SOFA 양측 위원장의 승인이 없으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에 가로막혀 협상 경과, 오염조사 결과 등을 국민들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두 29개 기지 중에서 26개가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 중에서 16개 기지는 토양과 지하수가 모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어 열흘 전 국방부의 합의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재차 증명해 주었다.

2.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에 관한 미국 주장과 진실

주한미군은 그동안 공공연히 주한미군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으며, 최선을 다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7월 14일, 주한미군 홈페이지의 '기지 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근거로 주한미군의 주장의 문제점을 반박하고자 한다.

1) 8개 항목 등 환경정화 미쳤다?

- 미국이 밝힌 정화 항목 8개
- ①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
- ② PCBs(폴리염화비페닐류) 품목 제거
- ③ 수송부와 유해물질/폐기물 집하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 ④ 소화기사격장의 피탄지 내 납, 구리 오염토양 제거 및 처리
- ⑤ 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
- ⑥ 저장탱크의 유류방출 및 제거
- ⑦ 난방 및 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분리
- ⑧ 냉방장치의 냉각제 배수 및 제거

그러나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공군 폭격장의 경우 불발탄 제거가 아직 채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반환되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7월 12일, 국방부는 앞으로 환경정화를 할 것이라는 주민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불과 이틀 뒤, 9차 SPI회의에서 합의한 반환 기지에 매향리가 포함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미군은 지하수 오염 정화가 필요한 5개 기지는 6개월 후 지하수 오염 제거를 끝내고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하수가 오염된 16곳 중 5개 기지에서만 ‘바이오슬러핑’이라는 정화 장치를 이용해 유류 오염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환에 합의된 나머지 11개 기지의 지하수 오염도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환경정화를 마쳤다고 보기 어렵다.



60cm 기름띠가 있는 지하수

2) 바이오 슬러핑이라는 최신 기법으로 지하수 오염 치유하겠다?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오 슬러핑으로 지하수 오염을 정화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바이오슬러핑공법은 토양 공극 내 유동이 가능한 자유상(Free phase)을 정화하는 것이지 토양에 흡착된 잔류성분을 제거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슬러핑공법으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오염이 심각한 토양을 제거하기 어렵다. 또한 주한미군기지들의 경우 무기로 인한 중금속 오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중금속은 이 바이오슬러핑공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다.

이처럼 미군이 제시한 5개 기지들에 대한 정화계획은 단순히 토양내 유동성 기름만을 제거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오염 토양/지하수 복원 계획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3) 원상복구 의무 없어 정화 책임도 없다?

주한미군은 SOFA 제 4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조항을 들어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OFA의 제4조 시설과 구역 (시설의 반환) 1항에는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전문가들은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군당국이 제공받은 시설 및 구역 즉 기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을 재건축 했을 경우, 기지 반환시 돌려놓을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지 환경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필요한 개량 및 건축물 설치를 행한 경우 동 기지의 반환 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도 2000년 이 조항이 합중국 군대에게 그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을 오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4)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아니다?

미군은 줄곧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요소'만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미군기지내 오염이 실제 질병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오염 정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미군의 주장은 토양 오염정화에서 실시하는 '위해성 평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미군은 한번도 판단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 부조차 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환경부가 미국쪽 판단 자료를 협상과정에서 공개 요구하지 않았다면 협상 과정 자체에 문제제기 해야 할 것이다.

5) SOFA 조항보다 진전되고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에서 세운 실행 계획이 다른 해외 국가와 비교해 진전된 계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군이 내세우는 지하유류저장고(UST), 전기제품에 사용된 PCBs 제거 등 대부분이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 Environmental Standards)에 기재된 내용이다. EGS 는 기지 폐쇄가 아닌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환경 기준이다. 따라서 평소에 미군이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철수 할 때 한꺼번에 실시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분류	오염원	특성	오염결과(가 기준)
유류	카드뮴	금속분지 또는 연기를 흡입한 경우 급성 중독현상으로 흉통, 현기증, 구토가 일어나 심한 경우 폐부종이 수반되며 심폐 기능부전으로 사망 가능	▲피주 하우스 3.7, 파주 게리오웬 2.93, 대구 워커 1.8 : 3 곳은 우려기준 초과. 파주 하우스는 대책기준에 거의 도달할 정도로 오염
	구리	사람이 과다한 구리 섭취로 만성중독이 될 경우에는 정신이상, 만성위장병, 피부궤양, 간경변	▲의정부 폴링워터 1,069 :우려수준(50)의 21배, 대책기준(125)의 8배를 훨씬 넘는 심각한 오염
	비소	만성중독시 근육력증, 식욕부진, 구역질이 발생하며, 피부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구 워커 14.9 : 우려수준(6)의 2배 이상, 대책수준(15)에 다다를 정도로 오염
	납	만성 납중독의 경우 권태감, 체중감소 등을 일으키며, 빈혈이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위장장애로 식욕부진, 변비, 산통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피주 하우스 970, 의정부 시어즈 424, 의정부 폴링워터 288, 파주 게리오웬 235, 파주 사격장 15,200 : 5곳의 기지는 모두 토양오염 우려수준(100)을 초과. 파주 사격장의 경우, 토양오염 대책수준(300)의 5배 이상 오염되었으며, 파주 하우스도 대책수준의 3배 이상 오염
	니켈	‘니켈 모노옥사이드(Nikel monooxide)’는 국제발암성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임. 니켈 중독의 경우 심한 전두통, 메스꺼움, 축농증, 무후각각, 비측중용, 비측격막천공, 피부 염증, 폐, 신경계통, 점막 손상 등이 있으며, 니켈 제련공장 노동자들에게 비강, 폐 및 후두암이 발생한 연구가 보고됨	▲캠프 콜번(205), 폴링워터(255), 라과디아(68) : 3곳의 기지 모두 대책수준(100)과 우려수준(40)을 초과, 캠프 콜번과 폴링워터는 대책수준의 2배, 우려수준의 5배 이상 초과
	아연	아연은 인체에 필수적인 금속으로서 간장, 신장, 근육, 혈액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결핍시 식욕감퇴, 성장저해, 탈모 등의 증상이 있으며 반면 다량 섭취 시에는 아연 중독을 일으킬 수 있음	▲캠프 하우스(4,421), 라과디아(2,554), 에드워드(1,824), 게리오웬(1,114), 폴링워터(964) 등 : 5곳의 기지에서 대책수준(700), 우려수준(300)을 초과하였으며, 3곳의 기지에서 우려수준을 초과함.
유류	BTEX	BTEX(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는 주로 저장탱크에서의 누출, 송유관로 파손 등으로 발생. - 벤젠 : 단기간 흡입 시 졸림,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 고농도 흡입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시 빈혈, 면역체계에 영향, 발암물질로 암발생 - 톨루엔 :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계통에 영향, 두통, 불면증 - 에틸벤젠 : 급성증상으로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 - 크실렌 : 장기간 흡입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증, 피로감, 경련 유발. 호흡근관이나 가슴통증 초래.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	▲하남 골번 1,152, 의정부 라과디아 959, 의정부 시어즈 193, 의정부 에세이온 719, 춘천 페이지 1,152, 의정부 폴링워터 170, 파주 게리오웬 243, 동작구 그레이 1,699 : (가)지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나)지역에서 우려수준(80)과 대책수준(200)이 설정되어 있다. 동작구 그레이의 경우 우려수준의 21배, 대책수준의 8배 이상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이 얼마나 유류관리를 엉망으로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가)지역은 논, 밭, 대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학교용지, 하천,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등을 말하며 (나)지역 : 공장용지, 도로, 철도용지, 잡종지를 말한다.
	TPH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총석유계 탄화수소로 유류(기름)로 주로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한다. TPH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이드로카본 등이 들어있으며, 석유계 기름은 식물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킨다.	▲ (가) 지역에서는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나) 지역에서 우려수준(2,000)과 대책수준(5,000)이 설정되어 있다. 춘천 페이지의 경우 우려수준의 25배, 대책수준의 10배 이상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가 기름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반환기지재협상 촉구 기자회견 자료(2006. 8. 1)

2부

제6장 주민의 삶, 그리고 인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중요한 인권문제를 낳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인권문제만 하더라도 단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 민주주의 문제로까지 질문이 나아간다. 평화적 생존권을 주장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인권옹호자들에게 국가는 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에서 국가폭력은 인권침해 종합 판이다.

1.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들의 투쟁

1) 대추리, 도두리, 미군기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비극의 역사

지금 K-6 미군기지(캠프 험프리)가 들어서 있는 곳은 원 대추리를 비롯해 현재의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며 살던 곳이었다.

일제는 1940년대 초 이곳에 살던 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당시 평택에서는 보국대로 끌려가 죽을 고비 넘겨가며 일본군 기지 건설에 동원된 사람이 많다. 연장은 삼과 곡괭이 정도였고, 사람 힘으로 논밭과 야산을 허물어 활주로와 격납고를 건설했다. ‘열 길에서 열댓 길’씩 곡괭이로 파고 들어가다 산이 무너져 죽은 사람도 많다.”

해방 이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일본군 기지를 미군이 계속 사용하였다. 1952년 1월 미군들은 활주로 공사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자마자 대책을 세울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불도저를 앞세우고 마을 집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가구도 챙기지 못한 상태에서 갯벌 근처로 쫓겨나 움집 생활이나 천막생활로 그 겨울을 나야 했다. “미군들은 불도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야산과 논밭이 순식간에 활주로로 바뀌었다. 이때도 대추리, 안정리, 서경재, 뗏장거리, 두정리, 함정리, 내리, 동창리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땅을 빼앗긴 채 쫓겨났다.” 그 뒤로도 미군은 계속 기지를 넓혀 현재의 K-6 기지는 150만평이나 된다.

이곳 주민들은 이후 미군들에 의한 폭행, 성폭행, 식수원 고갈과 소음과 같은 환경문제 등 미군기지 주변이면 항상 등장하는 각종 인권 문제에 노출되어왔다. 이런 그간의 사정은 어느 지역보다 주민들의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켰다.

미군들에 의해 마을에서 쫓겨난 주민들은 공동으로 집을 지어가며 마을을 만들고 갯벌을 개간하여 너른 들녘을 만들어갔다. 별다른 기계가 없던 시절 맨손으로 개간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고 어린 아이들과 늙은 부모들은 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달리해야 했다. 목숨과도 같은 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가족이 그 땅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의 갯벌을 개간하고, 너른 들을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젊은 농민들이 어른들을 도와 농사를 지어가며 현재의 마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에 주민들은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도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2) 주민들은 싸우고 있다

2002년 LPP(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에 따라 팽성지역에 24만평을 미군에게 공여, 확장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농민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미군기지 확장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3년 미2사단과 용산 기지의 이전논의가 시작되면서 언론을 통해 평택이 예정지역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농민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정부관리, 국회의원, 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그해 6월 미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부지 터로 평택이 발표되자 주민들은 7월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2004년 7월 한미간 기지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발표되고 해당 지역이 공개되기까지 정부는 주민들의 대화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평택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했다며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대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거부하였다.

2004년 8월 기지재배치 협정에 대한 한미간 가서명이 이루어진 후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보상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9월 1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평택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하려 하자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고 경찰은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 과정에 9명을 연행하였다. 주민대책위가 애초 이날부터 우리땅 지키기 주민촛불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위원장 등이 연행되어 첫 장소가 평택경찰서 앞이 되어 버렸다.

이후 주민들은 국회에서 용산협정, LPP 개정 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2004년 11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과 집회를 하면서 이 사안을 전국에 알려 나갔다. 주민들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잇따라 만나면서 연대를 요청했고, 이에 2005년 2월 1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요청에 호응하게 되었다.

이런 끈질긴 주민들의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은 전국으로 번져 나갔고, 각계각층이 자발적으로 이 투쟁에 함께 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2005년 7월 10일에는 평화대행진을 1만 2천명이 대추리에 모여들었다. 이날 대행진은 민중단체, 평화단체, 인권단체, 문화단체 회원들을 비롯해서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자발적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

주민들은 미군에게 전쟁기지로 생명의 땅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생존권을 주장했다. 최소한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동의절차도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이런 요구를 묵살하였다. 경찰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조사를 강행하였고 2005년 11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밟아서 마을과 농지에 대한 강제수용절차를 마쳤다.



2006년 1월 전국 트랙터 순례

이에 항의하여 주민들은 2006년 1월 트랙터를 타고 전국 순례를 진행하였고 정부의 영농 금지 통보에 대해 농민이 농사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며 공동 논밭이와 모내기를 진행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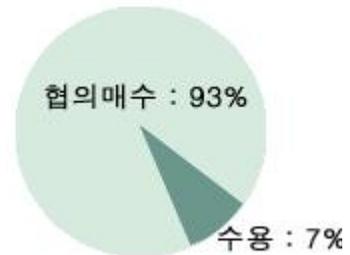
<표> 평택 부지매입 결과

구분	대상 (만평)	협의매수(평)				공탁(평)	
		계	비율	국·공유지	사유지	면적	비율
계	349	2,751,536	78.9%	529,147	2,222,389	738,404	21.1%
서단지 역	64	619,141	96.7%	88,988	530,153	20,859	3.3%
팽성지 역	285	2,132,395	74.8%	440,159	1,692,236	717,605	25.2%

* 출처 : 국방부, 『국방정책자료집』, 2006. 6, 73쪽

<도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의결한 협의매수면적 대 수용면적 비율 평균

(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토지수용제도안내>협의매수와 수용절차”)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계수치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지난 10년간의 평균 협의매수 거부 면적이 7%인데 비해, 팽성지역 토지 수용 대상자들은 그 4배에 가까운 25.2%가 정부의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였다. 특히, 학교법인 대양학원 소유 부지(약 20만 평)를 포함한 부재지주와 가옥이 포함되지 않은 주변지역 주민(신대리, 함정리 등)을 제외한 대추리와 도두2리 주민들의 최소한 절반 이상은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 모진 탄압과 회유 속에서도 지금까지 절반 안팎의 주민들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입증한다.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난 주민들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어려워 실의와 안타까움 속에 지내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버티자 정부는 2008년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 추진 일정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농지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해 5월 4일 폭력적으로 농지를 점령했으며, 2006년 말까지 마을을 완전히 파괴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팽성대책위에 처음으로 대

화를 공식 제의하였고, 4월 30일과 5월 1일 두 차례 대화가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대화를 제의하는 그 순간에도 대추리, 도두리 일대 농지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작전 예행연습을 감행하였다. 결국 국방부의 대화 제의는 자신들의 농지와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만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주민 조직인 팽성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이 구속된 상황이고, 이에 주민들은 주민대표를 구속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을 계속 회유, 압박하면서 강제철거를 준비하고 있어 이후 엄청난 인권침해가 자행될 것이 예상된다.



문정현 신부 단식 22일째, 김지태 위원장 석방 촉구 청와대 기자회견

2. 정부에 의한 인권침해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아나갔고, 토지수용 재결을 얻어낸 뒤인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농지와 마을에 대한 침탈을 시작했다. 정부는 3월 6일 대추분교에 대한 강제점수를 시도하다가 저지되었고, 3월 15일, 4월 7일 농지를 강제점수하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하여 총공세를 펼쳤다. 급기야 5월 4일 경찰 1만 2천명, 군인 3천명, 철거용역 7백 명을 동원한 국방부에 의해 대추분교가 파괴되었고, 대추리, 도두리 일

대 미군기지 확장 예정 터에는 군사점령이 시작되었다.

주민들과 평택범대위 회원들은 비폭력 평화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으나, 공권력은 무차별 연행과 구속, 수배, 집회의 원천봉쇄 등으로 이 저항을 무력화하려 하였다. 2006년 5월 4일,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군사점령 이후 경찰은 상시적으로 마을 입구를 봉쇄하여 주민들의 마을 출입마저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철차도 위반하여 설정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뿐이었다.

정부의 종합적인 인권침해 행위를 5월 4일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정부의 군사작전

정부의 일련의 공세는 군사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군과 경찰, 거기에 용역직원까지 동원하여 종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점령한 것이다.

이미 3월 6일, 15일, 4월 7일의 대추분교와 농지를 강제 접수하려 시도하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을 차단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목적만 달성하려 하였다.

5월 4일의 이른바 ‘여명의 황새울 작전’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적군을 섬멸하는 듯한



5월 5일 군인들이 민간인을 포박하고 심지어 머리에 가방을 씌워 얼굴을 가리고 있다.

치밀한 군사작전을 감행하였다. 국방부는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민과의 대화를 약속한 4월 28일 오후 군과 경찰의 작전 예행연습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군과 경찰의 이러한 작전을 통해 5월 4일과 5일의 대규모의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국가기관의 대규모의 인권침해에 대해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여 대량 구속을 예고하고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굳이 거론할 것도 없이 수사의 기본원칙인 인권의 보호라는 관점은 전혀 갖추지 못한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공안적 관행으로 퇴행한 것이다.

따라서 평택 사태는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계획하였고, 이를 역할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가폭력 범죄행위의 종합 판이었다. 이는 국가가 권력을 작동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안전과 인권을 위한 고려는 생략한 채 스스로 폭력집단으로 전략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방부와 경찰은 당시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활동은 전혀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체포, 연행하기에 급급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의 진입도 가로막아 오히려 타 기관과 민간에 의한 구제활동도 가로막고, 치료를 하려는 의료진에게도 폭력을 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변호사와 인권활동가들마저 무차별적으로 연행하고,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옹호활동도 가로막았다.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군과 경찰은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과 시위대의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구속과 균형법 적용 등으로 주민과 시위대를 협박, 공갈하는가 하면 경찰과 군의 피해만을 부각시키고, 심지어 경찰은 조직적으로 언론기사에 대한 댓글을 다는 행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이후에도 마을에 대한 통행제한을 비롯한 주거권 침해 등의 반인권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후 정부는 점령 농지를 군사시설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래서 대추리, 도두리 일대 농지는 파괴되었고, 2중, 3중의 철조망과 군의 초소가 세워졌으며, 도로가 끊기고, 전봇대와 전등이 세워져 더 이상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민과의 대화라는 기만적인 심리전을 쓰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토지 공탁금을 찾아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의 문제점과 군인들에 의한 인권침해

대추리의 농지 및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그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으며,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 강제 접수한 농지 및 토지를 계

속해서 점령하기 위해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추리에서 끝까지 투쟁하는 시민들에게 균형법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006년 5월 4일 대추리에서는 군대가 직접 시민을 상대로 가혹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날 대추리 일대에는 수도군단 700 특공연대 2개 연대 2,800명이 동원되었다. 계엄이 선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군대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무시무시한 사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대추리 도두2리 일대를 주민과 일반시민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동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그 구역 주변으로 수십 킬로미터 길이로 중세시대의 해자를 능가하는 깊은 웅덩이를 파놓았다. 그리고 그 웅덩이 뒤에는 2중 3중의 철조망을 세웠다. 철조망 주변을 무장한 병력이 경비하도록 하여 민간인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했으며, 이에 항의하는 주민·시민들에 대해서는 균형법을 적용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대추리 상공에는 군용헬기가 떠다니며 뼈라를 뿌리는 등 이른바 ‘선무공작(宣撫工作)’을 펼쳤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군대의 대민 활동조차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필요성’이 민간당국에 의해 입증되고 군대의 도움 없이는 민간당국이 그 상황에 대처할 다른 방도가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행 헌법 제5조 제2항은 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한정하여 평상시 군대가 일반시민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5월 4일 이후 국방부가 취한 조치는 헌법이 군에 위임한 그러한 임무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하여 2006년 5월 4일 이후 평택 대추리는 “사실상의 비상사태”(de facto emergency), “계엄 선언 없는 계엄” 상황 하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헌법 제5조 제2항 외에 헌법 제77



군인들이 사진, 동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민과 평택지킴이들의 활동을 채증하고 있다.

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점령과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

2003년에 유엔총회는 이스라엘정부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국가방위를 위해 건설하는 분리장벽이 국제법에 위반하는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국제사법재판소는 장벽의 건설로 인한 침해는 “군사적인 급박성이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요청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확인하면서,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반을 중단할 의무와 구체적으로 장벽건설 작업을 중단할 의무, 팔레스타인점령지역내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 장벽건설에 관한 모든 입법과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금전배상 또는 다른 형태의 배상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사점령 상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게 시민·정치적 권리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범이라면 국민을 향한 군사력 행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법은 또 어떤 법인가?

1972년 유신독재 하 ‘비상국무회의’에서 만들어진 군사시설보호법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실현하는 국방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반 행정의 규제권한을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과도한 군사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민지배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이 누차 지적되어 왔는데, 그마저도 이번 대추리 사안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이용되었다.

나아가 노무현 정권과 국방부는 우리 국민에게 생명과도 같은 벼가 자라는 농토 위에 일방적으로 철조망만 두르면 그곳이 군사시설이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는 부족했는지 그 철조망을 지키는 군인과 부딪히기만 하면 균형법을 적용하여 초병폭행죄로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으니,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이제껏 우리국민이 싸워서 쟁취한 탈군사주의, 평화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토대로부터 위협받고 말 것이다.

국방부는 2008년 말까지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 완료를 거듭 미국에 확인하면서 2006년 말까지 완전히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부는 강제 이주 과정에서 잔인한 국가폭력을 자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3)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작전에 투입된 경찰은 5월 4일 110개의 전의경 중대, 1만 1천명 이상을 동원하였다.

경찰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행정응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전의 주체로 나서서 각종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경찰은 직접 길을 나서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여 행정응원의 범위를 훨씬 넘는 역할을 했다.

5월 4일 이른 아침 내리 쪽에서 행정대집행에 대해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곤봉과 방패, 돌멩이를 던져서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5월 4일 진압 과정 내내 곳곳에서 유혈사태를 낳는 불법하고 과도한 진압을 자행했다. 경찰의 공격은 주로 안면부에 집중되어 지난 하반기 고 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때에도 지적되었던 것과 같은 공격 양상을 되풀이하였다. 경찰은 연좌, 연와하고 있는 시위대를 짓밟고 지나가고, 대추분교 진압 과정에서는 1층 유리창을 모두 깨고, 주위의 집기로 폭행하기도 하여 대추분교 곳곳에는 유혈이 낭자하도록 만드는 잔인성을 보였다. 시위대의 연행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추행도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경찰은 5월 5일 범국민대회와 주민 촛불집회가 끝난 한밤중에 마을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무더기 연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으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후에도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후 경찰은 상시적으로 마을 주변에 전경 25개 중대를 배치하여 마을로 들고나는 외부인들을 통제하고, 마을 곳곳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을 상시적으로 불법 감시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마을 주민들의 출입마저 봉쇄하고 있다. 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이유로 마을을 고립시켜 주민들과 평택범대위의 연대투쟁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후에 진행된 범국민대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 접수를 거부하고,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려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해가며 연행하였다. 또 범국민대회를 차단하기 위해 평택시내에서 대추리, 도두리로 들어가는 크고 작은 도로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시내버스마저 돌려보내는 등의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4) 검찰의 태도

3월 15일과 4월 7일 농지 강제접수에 저항하던 인권옹호자들은 89명이 연행되었다. 5월 4일에는 524명, 5월 5일에는 1백 명이 연행되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폭력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가 덧 씌어졌다.

다만 검찰의 무더기 영장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그나마 구속 기준을 적용하여 대거 불구속 처리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부과함으로써 법원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이라는 부당한 반인권 사업을 법적으로 승인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검찰은 시위대가 인권 피해 경찰을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이 저지른 폭력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으면서 방치하여 경찰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5) 강제철거와 인권

농지를 군사점령하고 마을 고립시키고 있는 정부는 이후 빈집 철거와 생가 철거를 예정하고 있다. 이미 국방부는 철거 용역업체 선정을 마쳤고, 용역업체들이 현지답사를 한 상태다.

결국 이런 국방부의 강제철거 준비는 지금까지 잔인한 재개발지역의 철거과정을 이곳에서도 재연하겠다는 태도라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강제철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여 유엔에서도 수차례나 강제철거의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수적으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주거권을 부정하는 극악한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거용역업체들이 고용한 폭력배들에 의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 사건을 비롯한 폭력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은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이다.

강제철거는 유엔(UN)에서도 어느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주에 동의하는 이들이라면 이들의 이주대책을 먼저 세운 뒤에 이주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주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을 강제로 소개하고, 주택을 비롯한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어서 어느 경우에도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과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 방안은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강제철거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의 중단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막는 일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반민주적인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등장하고 있다. 대추리, 도두리 지역의 주민들이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

하고, 자신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런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민주적 절차를 도외시킨 채 무력으로 마을과 농지를 파괴하여 미군에게 전쟁기지로 넘겨주겠다는 것은 위험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권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위험적·반인권적 상황은 즉각 종식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 대추리에 주둔 중인 군 병력을 즉각 철수시키고 강제접수한 대추리 도두리 일대 토지를 주민들에게 즉각 반환해야 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 병력에 의한 위법·위헌적인 토지 강제점령으로 인한 주민과 시민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정세가 매우 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불길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로 인해 무력분쟁과 전쟁의 위험이 한반도에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급격히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상황은 안타깝게도 형식적 합법성의 이름을 가장한 채, 적나라한 폭력에 다름없는 법을 앞세워 국민들의 비판을 비껴가고 있다.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현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복종과 저항을 펼쳐 유린당한 평화적 생존권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독재정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보론 / 평화적 생존권

평화적 생존권이란 한마디로 국민 각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논의가 있어왔고 일본 헌법 9조에는 이를 명시한 조항과 그것을 확인한 판결이 있다.

그렇다면 전쟁과 냉전 시대를 그 어느 나라에서보다 참혹하게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이러한 권리가 우리 헌법체제 아래에서도 인정되는 것일까?

그동안 법원과 주류, 강단(講壇) 헌법학계는 우리 헌법이 명시한 것은 평화주의(헌법 제5조 제1항), 평화통일(헌법 전문 및 제4조) 조항일 뿐이라고 보면서, 개인의 권리로서 평화적 생존권의 '확인'과 '승인'에 게으름을 부려왔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 특히 대한민국에서의 인권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민중들은 모든 인권의 출발점이 될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를 먼저 자각하고 이를 법적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고 있다. 바로 그러한 투쟁의 선봉에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서 있다.

강단헌법학자들도 인정하듯이 평화주의는 다른 헌법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해야할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화주의를 인권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평화적 생존권 역시 바로 그 최고의 가치규범으로부터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헌법 제37조 제1항)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헌법 제5조 제1항 전단과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을 도출해 낼 수 있다는 해석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헌법재판소도 이 점은 부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결정)

평화주의에 기초하여 침략전쟁을 부인하지 않으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보는 것처럼 침략전쟁이 난무하여 인간의 평화적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고,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 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적 생존권이다. 국가가 전쟁을 대외정책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려면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운엽 작가의 판화 '항새울 가족'을 배경으로 만든 주민대책위 깃발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 신속기동군화 및 이를 위한 군사변환 등 - 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용산기지의 수평후방이동이 아니라 신속기동군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 확대이전이라는 점은 평택 주민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이런 엄중한 현실 앞에서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결연히 평화적 생존권 쟁취투쟁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적 생존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평화와 평화적 생존의 개념에 대한 이해차이, 개별 국가의 역사적·국제관계적 특수성, 개별 국가의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에 따라 평화적 생존권의 의미내용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평화적 생존권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국가에 의한 침략전쟁의 부인, 집단적 자위권의 부인, (군비보유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 저해 행위(무기수출)의 배제, 국가에 의한 평화적 생존 저해 행위(징병제)의 배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재산수용, 표현자유 제한) 금지, 전쟁위험에 처하지 않을 권리 등이다.

이러한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이번 평택 대추리 사안에 적용하면 평화적 생존권은 대내적으로는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본권 제한과 본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군사외교정책이 전쟁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도 자국을 전쟁위험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의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특히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 경작권 등은 헌법상 “보장”되지만,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헌법 제23조). 그러나 여기서 정당화되는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및 경작권의 수용 등이다. 침략을 위한 군사적 목적의 기지건설 혹은 확대를 위해서까지 재산권 등이 수용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이번의 토지수용, 경작지 수용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토방어를 위한 기지건설이라는 공공필요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본권 침해였다면, 자식과도 같은 농토와 거주지를 잃는다는 원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국가의 결정을 결국 수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이래 전쟁의 참화를 겪어가면서도 평화의 농토, 이름다운 공동체를 어렵게 일구어온 이들에게 그 땅을 침략전쟁을 위한 군사기지건설용으로 내어 놓으라고 억박지르고 이를 물리력으로 관철시키려고 했으니 이들이 어찌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국가의 그러한 행위는 법률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며, 국민을 향한 전투행위였으며, 결국에는 전 국민을 전쟁의 위협에 빠뜨리는 무모한 군사주의였기에 이들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은 전 국민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전국의 그 어느 마을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왔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평화적 생존권을 드높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부록

1. 정부측 사업의 추진경위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일지

	정부측 사업추진 경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투쟁일지
	'88. 3. 용산미군기지 이전 검토 지시 '90. 6. 용산기지이전 한·미합의서 체결 '02. 2. 주한 미군기지 통폐합 필요성 제기 '02. 3. LPP협정체결 '02. 10. LPP 국회비준동의 발효	
'03	4. 8-9. 주한미군기지체계 조정 협의(1차 FOTA) 5. 15. 한·미 정상, 용산기지 조기이전 합의 및 2사단 재배치 원칙합의 7. 미2사단 주력부대, 평택으로 이전 합의(3차 FOTA) 10. 10. 용산기지 새로운 이행 합의서(UA/IA) 작성 및 LPP 수정 합의(5차 FOTA) 10.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창설	7. 29. 미군기지 확장 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 발족식 12. 18. 대추리 황새울 들녘에서 농성시작
'04	1. 미측 요구로 유엔사/한미연합사 등 모든 용산기지 이전 합의(2.5만평 제외) 7. 25.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UA/IA 잠정 합의(10차 FOTA) 9.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평택대학교). 10. 28.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 서명 11. 4~5. 경찰 2천여 명 동원한 불법적 지장물 조사. 12. 9.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 국회비준 동의 12. 주한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7678호)	1. 13.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5. 29~30. 5.29 반전평화문화축제 8. 28.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결기 대회 9. 1. 주민의사 무시한 채 강행된 평택특별법 공청회에 주민들 항의. 9명 연행. 평택경찰서 앞에서 김지태 위원장 등 연행자 석방, 우리땅 지키기 1일째 주민촛불행사 진행 11. 4~5. 경찰 2천여 명 동원한 불법 지장물 조사에 주민들 강력히 항의 11. 22~12. 7. 용산협정, LPP개정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회 앞 천막농성 12. 7. 용산협정, LPP개정협정 국회비준저지, 주한미군 재배치 철회 위한 팽성주민 국회 앞 결의대회 12. 9. 팽성주민 촛불 100일 행사 12. 18. 대추리 평화축전 - '들이 운다'

<p>'05</p>	<p>2. 21. 정부, 수용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및 물건조사 실시 4. 주한미군 이전지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6. 2. 국방부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11. 23. 미협의 부지 중토위 수용재결(74만평) 결정 12. 미협의 부지 법원 공탁(1,335억 원)(토지 소유권 국방부로 이관)</p>	<p>2. 2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기자회견 3. 5.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 3. 15~17.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 농활 7. 10.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평화실현 평화대행진 8. 8.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와 반전평화 결의대회 9. 1. 주민촛불행사 1주년 기념 및 '열수왕궁' 9. 3. 주민촛불 1주년 문화한미당 10. 29. 강제토지수용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평택역앞 철야농성 시작 11. 15. 주민 증언록 '들이 운다' 출판기념 기자 회견 및 고사(국방부 앞) 11. 17. APEC 경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경주역 집회 12. 11. 2차 평화대행진(프랑스 농민운동가 조세 보베 등 해외참가자들과 국제 토론회 등 개최)</p>
<p>'06</p>	<p>1.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2. 팽성지역 LPP부지(24만평) 미착공여 3. 6. 법원, 경찰, 국방부, 대추초교 강제집행 시도 3. 15. 국방부 농지와 농로 파괴 시도 4. 7. 국방부 농지와 수로 파괴 시도 5. 4. 대추분교 파괴, 농지 강탈, 철조망 설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7. 28. 팽성 기지확장 대상지역 주민 주택 인도 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p>	<p>1. 3~15. 트랙터 전국 순례. 1. 15. 주민촛불 500일 행사 2. 7. 팽성주민 주민증 반납 기자회견(평택시청 앞) 2. 11. 들사람들, '비닐하우스 콘서트' 시작 2. 12. 3차 평화대행진(정월 대보름 지신밟기) 3. 3. '갑오농민전쟁' 조형물 제막식(대추초교) 3. 6. 대추초교 강제 집행 온몸으로 저지 3. 15. 국방부 농지침탈 저지(40명 연행) 4. 7. 국방부 농지 침탈 및 수로 차단 저지투쟁(31명 연행) 5. 4. 군경용역 1만5천명, 대추초교 파괴, 농지 철조망 설치(524명 연행, 수백명 부상) 5. 5. 강제침탈 규탄 1차 범국민대회(100명 연행) 5. 14. 5.18정신계승, 군부대철수, 국방부장관 퇴진,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검토 평화농사실현 2차 범국민대회 5. 18. 평택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5.18선언 6. 9. 평택미군기지확장 관련 KBS 1TV 심야토론 6. 18.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3차 범국민대회 7. 5~9. '평화야, 걷자' 285리 평화행진 7. 2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범국민대회 8. 2. 우리땅 지키기 700일 팽성주민 촛불행사</p>

<p>향후 계획</p>	<p>2006. 8. 잔여부지 미측 공여 합의 건의문 작성 및 공여 9. 4계절 환경영향 평가 및 거감대책 강구 9. MP작성/사업관리용역단(PMC) 선정 10.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시굴조사 추진(3개소/8만평) 10. 이전 부지(팽성지역) 성토작업 착수 10.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기본설계 완료 2007. 6.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실시설계 2008. 12. 사업완료</p>	<p>2006. 8. 9-12. 김지태 위원장 석방, 강제철거 중단 청 년행진(서울·평택) 8. 12. 평택시민 촛불문화제 8. 15. 8.15 자주평화범국민대회(용산-광화문) 8.말 - 9.중순 전국순례 9. 1. 우리땅 지키기 팽성주민 촛불행사 2주년 9. 17. 평택 시민대회 9. 24.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4차 평화대행진</p>
------------------	---	--

2. 자료

1) 주요자료 소개

(아래 자료들은 평택범대위 홈페이지 정보자료실 문서자료란에 있습니다)

LPP협정 비준동의안(2002. 4) 정부가 국회에 제출

LPP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2.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용산기지 이전합의서 협상결과(2004. 7. 24) 국방부 정책실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2004. 10. 29) 정부가 국회에 제출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2004. 10. 29) 정부가 국회에 제출

용산기지이전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4. 1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2004. 1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협정 명칭

- LPP 협정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 LPP 개정협정 :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 개정협정
- 용산기지이전협정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 포괄협정(UA : Umbrella Agreement)
- 용산기지이전협정 이행합의서(IA : Implementing Arrangement)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이행을위한합의권고에관한합의서

2)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의 군사위원회에 대한 전략기획지침(2002. 12. 5)

1994년 10월 7일 작성된 군사위원회(MC)와 한미연합사 관련 약정(TOR)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방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은 제3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간 전략 기획지침에 합의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한미 군사능력의 발전,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안보 공약의 현실, 대한미국에 대한 위협 성격의 변화, 그리고 한미동맹의 강화 등을 반영하여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양자간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연합사가 수행할 미래 작전계획을 지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기획지침을 군사위원회에 하달한다.

1.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신속하게 격퇴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과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작전계획 5026을 발전시킨다.

2. 이 작전계획은 2003년 7월까지 수립한다. 군사위원회는 한미 국방부가 작계 수립과정을 지도하고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진행사항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3. 이 계획은 다음과 같은 작전 목적을 달성한다.

가. 북한의 공격을 서울 북방에서 격퇴시킨다.

나. 북한군을 남한으로부터 축출한다.

다. 북한 포병이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지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한다.

라. 연합사 작전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북한의 화생방 능력(운반수단 포함)과 지휘, 통제체제를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킨다.

마. 한국군과 미군은 북한의 주된 공격작전 재개를 차단하도록 배치하며, 작계 5027 또는 개념계획 5029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준비한다.

4.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결정적으로 격멸하기 위해 UNC/CFC 작전계획 5027을 수정 및 최신화한다. UNC/CFC 작전계획 5027의 작전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북한군을 격멸한다.
- 나. 북한정권을 제거한다.
- 다. 한반도 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5. 전략지시 제2호에 명시된 연합사의 임무에는 변동이 없다.

6. 2002년 12월 5일 워싱턴 D.C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글본과 영문본 각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국방부를 위하여
이 준
국 방 부 장 관

미합중국 국방부를 위하여
도날드 H. 럼스펠드
국 방 부 장 관

3) 용산기지 이전협상 평가 결과보고(2003. 11. 1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 목차 -

I. 배경

II. 협상진행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III.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IV.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2. 협상내용에 대한 평가

V. 조치건의

I. 배경

-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간 외교·국방상 핵심현안의 하나로 단순히 이전 관련 비용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와 안보, 국방분야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국내정치와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 지극히 중요한 현안임
- 현재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처리, 잔류부지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에 도달하고 막바지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나
- 잠정합의 내용이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새로운 요구조건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룸으로써
- 내부적으로 협상내용과 진행과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대로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경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은 물론 대표적인 대미 불평등외교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어 합리적 한미관계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 협상 관련 모든 상황을 되짚어 보고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실) 차원에서 협상 직접담당자들과의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토론하고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검토한 후 그 평가결과를 보고드릴

※ 평가회의 진행상황

- 일시·장소 : 11.11.(화), 11.14.(금) 2차례, 민정수석실 회의실
- 회의주재 :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 참석자 : NSC 서주석 실장 외 1인, 외교부 위성락 북미국장, 조약과장 외 3인,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 외 3인,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1인, 민간전문가 2인 (김영석 이대법대 교수, SOFA 전문가 이정희 변호사) 등

II. 협상진행 경위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 88.3월, 노태우 전대통령, 국방부에 용산기지 이전문제 검토 지시
- 89.6.23. 「주한미군재배치법안(Bumpers법안)」 미 상원 제출
- 92년까지 주한미군을 2만 1천명 수준으로 감축(재배치)
- 89.9월, 동 법안은 감군에는 반대하되,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의 Stevens 수정안으로 미 상원 통과
- 90.2월, 체니 국방장관 방한,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 변경 문제 협의
- 90.6.25. 이상훈 국방장관-Menetry 주한미군사령관간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 서명·교환
- 96년까지 용산기지내 사령부는 오산으로, 기타 지원부대는 평택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당시 국방부 추산 1조2천억 원)은 한국 측이 전액 부담하는 내용

○ 91.5.20. SOFA합동위원회에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과 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 90년 각서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고 서명

- 이보다 1주일 전(5.13), Fogleman 부사령관은 외무부를 방문하여 90년 각서가 법적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면서 동 문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

- 당시 반기문 미주국장은 국방부로부터 '군사기밀'을 이유로 뒤늦게(5.8) 각서 사본을 이첩 받아 검토중이라며 서명을 거절하다 미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결국 서명(붙임자료 2. 로 첨부된 안기부의 '정세보고' 기술)

※ 88.7.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 온 유광석 외무부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국측 로비로 전보된 바 있음 (위 '정세보고')

- 미국측은 동 서명시점을 정식조약 체결시점으로 해석하여 91.5월에 기지이전에 관한 유효한 국제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

○ 91.6.1. 합의 협정의 첫 번째 이행조치로 용산 미군 골프장 폐쇄

- 92년, 정부는 반환받은 골프장 부지를 서울시에 200억원에 양도하고 받은 금액으로 남성대 골프장을 건설한 후 이를 미측에 공여

○ 93.5-6월 문민정부 출범 이후 막대한 이전비용 등을 감안, 용산기지 이전계획 전면 유보 (붙임자료 4. '용산계획 추진실태 검토' 참조)

○ 01.12월 한미 국방당국, 제1차 고위정책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재추진기로 합의

- 재추진 배경으로 당시 용산기지 미군숙소 건립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미군측이 용산기지내 숙소용 아파트건립 신청, 서울시와 국방부는 과거 이전 논의 사실 등 이유를 들어 문제제기) 본 사업의 추진여부가 다시 부상하였고, 양국은 02.3월 '용산기지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 협의 시작

○ 02.5.16. 대통령 방미 한미정상회담시, 용산기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하기로 합의

- 02.6.45. 한미 국방당국,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 제2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등의 이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전하기 용이한 시설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키로 합의
- 02.6.26-29. 국방부장관, 방미회담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재확인
- 02.11.28. 국방부 정책 기획국 김선규 서장과 주한미군사 기획관리참모부장간에 '서울 주둔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기본요구서(IMP : Initial Master Plan) 작성에 관한 절차' 체결

※ 이 합의서는 "서울주둔 미군기지 이전 관련 1990년 6월 25일 체결된 합의 각서(MOA) 및 양해 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하여..."라는 "배경" 문구에서 보듯 1990년의 합의각서를 적법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바, 이는 용산기지 이전 재논의에 관한 최초의 합의문서로서 정부에 의하여 협상 대표권이 임명되지 않는 국방부 정책기획국장이 1990년 합의 각서의 유효성을 임의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음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 03.5월 대통령님 방미시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확인
- 용산기지 이전 관련 90년 합의가 형식·절차 및 내용면에서 위헌적인 요소와 함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고, 당시의 추진배경도 89년의 「주한미군 재배치 법안(Bumpers법안)」에서 보듯 미국의 요구의사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크에도 불구하고(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이러한 미국의 군사정책변화를 인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미군기지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여겨짐), 대통령 방미 이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당위성만 대통령께 보고됨으로써 조속한 기지이전을 확인해준 것이 아닌가 의문이 있음
- 03.6.45 제2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및 03.6월 국방부장관 방미시에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 원칙 재확인
- 03.6월 외교부 북미국은 13년 만에 90년 MOA/MOU의 절차적 이행을 위한 법적자문을 외교부 조약국에 의뢰
- 조약국은 90년 일부 당국자와 정부 일부 부서만의 조약서명 및 체결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건에 대한 우리측 협상대표팀의 법적 유효성 인정 및 사후 추인 시

도의 부적절성 지적

○ 03.7월 외통부장관이 관계법률에 따라 차영구 국방부정책실장을 용산기지 이전 한국측 협상대표, 위성락 북미국장을 협상 부대표 등으로 임명

※ 따라서 03.7월 이전까지는 협상대표권을 부여받음이 없이 국방부 및 외통부 관계자가 협상 진행

○ 03.7월 제3차 한미동맹 조정회의 개최시 한국측은 90년 체결된 MOA/MOU의 절차상 중대 문제점(국회동의 미확보)으로 인해 국내 재원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에 대비, 국회동의 용 신규협정 체결의 필요성 및 MOA/MOU 중 일부사항의 수정(청구권, 영업손실보상) 필요성 주- 미국 측은 90년 체결된 MOA/MOU는 법적으로 유효(미국 하원에 보고)하지만 재원확보를 위해 한국 측이 국회동의용으로 새로운 형태의 협정체결을 희망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당시 차영구 정책실장은 “한국정부도 과거의 90년 합의를 존중(respect)하는 입장임. 그 기본 정신에 따라 한국이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음”이라고 발언하고, 위성락 북미국장은 “90년 합의서의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음”이라고 발언하여, 협상초기부터 90년 합의를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음 (붙임자료 7. 참조)

○ 03.8.15. 대통령님 경축사에서 용산기지의 최단기일내 이전 원칙 재천명

○ 03.9.34 제4차 한미동맹조정회의시 미국측은 90년 MOA/MOU 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을 담은 Umbrella Agreement 및 이행합의서(IA)초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0년 MOA/MOU가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통보

○ 03.10.6-8 제5차 한미동맹 조정회의에서 용산기지내 미 대사관 시설(Non DOD Facility) 처리, 잔류부지 규모 문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

- 협상팀(NSC, 외교부 북미국, 국방부 정책실)은 90년 각서의 국내법적 문제점 및 불평등 내용을 상당부분 개선·수정하였다고 긍정평가하고 이를 대통령님과 상부에 보고 (붙임자료 8. 참조)

※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90년 각서가 완전히 폐기되지 못하고 그 핵심문제점이 온존한 가운데 기지이전 원칙과 일부 시설내역 등 면에서 불평등 요소가 오히려 가중 (붙임자료 13. 16. 및 17. 의견서 등 참조)

○ 양측은 금번 럼스펠드 국방장관 방한과 한미 안보연례협의회(SCM) 개최시 용산기지 이전문제의 완전합의를 지향했으나, 미대사관 시설 및 잔류기지 규모문제 등 쟁점사항 외에 협상진행과정과 내용에 대한 강력한 내부 문제제기 등으로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임

III. 협상내용 및 문제점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 형식·절차상 문제점

- 90년 용산기지이전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정부간 협정이 아닌 기관간 약정형식으로, 기지이전 자금제공, 청구권에 대한 보상 등 국방부장관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정부대표로 임명되지 않은 국방부장관 명의로 체결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 이전 관련 막대한 소요비용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지우는 조약인데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헌법 (제60조 제1항) 위반으로 국내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헌법 제60조 제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상술한 바와 같이 91.5월 SOFA합동위에서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위 MOA/MOU의 법적효력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것으로 MOA/MOU의 국내법적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음

- 한편 미국측은 위 91년 양측대표간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적법한 조약이라고 주장하

고 있으나, 미국측은 90년 MOA/MOU가 조약체결에 관한 한국법에 위반한 것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당시 SOFA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를 사전 방문하여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이 있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제51조에 의하여 국제법적 효력도 부인되어야 할 것임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 1. 조약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제51조 국가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내용상 문제점

- 90년 MOA/MOU는 내용면에서도 미측에 전적으로 유리한 지극히 불평등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최근 언론에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 각종 시설 공사시 미국시설기준 적용, 이전기간 중 PX, 식당 등 위락시설의 손실 전액 보상,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사비와 피해보상 부담,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경비까지 모든 이전 비용을 한국 측이 전액 부담토록 규

- 용산기지 이전사업비용의 경우 90년 MOA 체결 당시는 17억불, 97년 기준 95억불로 추산되는 등 (붙임자료 3. 서신 2쪽 : “1991년 달러 이전비는 17억불로 추산되었으나, 1997년 달러시세로는 95억불로 추산될 것입니다.” 참조) 총 이전비용의 규모가 시간이 감에 따라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합의각서 당시부터 정확하게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그 재원도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로 합의각서가 체결됨

- 당시 한국 측의 요구로 기지이전이 이루어지는 만큼 한국 측이 모든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의 용산기지 이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가 배경이 된 것으로서, 오히려 미국 측 요구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야 할 요소가 있음

- 미국 측은 내부적으로 90년 MOA/MOU가 미국 측이 근래에 체결한 가장 유리한 기지 이전 관련 국제합의조약으로 간주하고 있음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 협상내용상의 문제점

-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전면적용 문제
 - 협상팀은 이번 평가회의시 본 기지이전 협정이 헌법 60조 1항이 규정하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미군기지의 반환과 제공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SOFA의 틀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에 협상에 임해왔으며, 미국 측도 기지이전문제는 기본적으로 SOFA에 속한다며 용산기지 이전 관련 포괄협정(UA)과 이행협정(IA)을 모두 SOFA 부속문서로 두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 그러나 SOFA는 개별시설과 구역의 공여와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기지이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독립된 조약에 해당하는 용산기지 이전 관련 협정문서를 SOFA부속문서로 둘 근거가 없음
 - 협상팀은 SOFA틀내 협상을 부인할 경우 미측의 반발로 협상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협상결과로 작성된 협정서 초안을 SOFA의 부속문서로 규정지우는 오류를 범했음
- 우리측 비용전담 원칙의 문제
 - 01년말 용산기지내 미군숙소 건립 문제를 계기로 용산기지 이전논의가 재개되고 그 과정에서 90년 합의당시의 배경과 관련하여 여전히 우리측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측이 이전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협상팀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오산·평택 등 한강 이남의 두 지역을 ‘전략적 허브’로 하여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주한미군 성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서, 적어도 이번의 용산기지 이전은 (비록 우리도 원하는 바라 할지라도) 미국측 요구에 의한 요소가 더 많음이 명백하다 할 것임

※ 붙임자료 6.

- 해결방안은 일본/독일의 사례의 원용, 90년 당시와 달리 용산기지이전 요구 주체의

변화(금년에는 미측이 조기 이전을 선제의)를 감안하여 협상을 통해 한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며, 최소한 일본·독일 사례와 비슷하게는 관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한측 의견으로 제시된 바 없음)

- 따라서 우리가 이전비용을 전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협상팀은 이에 대한 검토 및 문제 제기가 전혀 없었음

○ 비용산정 및 이전시설기준의 문제

-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국방장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비용이 30억~50억불 수준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이미 미국측 스스로 97년 기준 이전 비용이 95억불이라고 추산한 바 있고, 최근 MBC 보도에 의하면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하여 절반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20조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하고 있는바, 미국측은 현재까지 이전비용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이처럼 비용 규모가 막대하게 된 배경은, 이전시설기준문제와 관련하여 90년 협정은 “연합작전능력이 저하되지 않을 것(no degradation)”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번 협정에서는 “연합작전능력, 준비태세, 삶의 질, 미군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될 것(maintained or enhanced)”으로 이전 기준의 원칙을 상향시킨 데다가 시설물 내역에 병원, 행정시설, 가족동반숙소 및 첨단정보시설 등을 추가하여 90년 보다 훨씬 증대될 것이 분명함

- 또 협상팀은 기지이전시 미군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미 국방부 최소기준을, 한미공용사용 시설에 대하여는 한미공동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막연히 ‘미국기준’이라고 규정한 90년 합의서의 문제점을 극복하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일본의 기지이전 사례에서 이들 나라들은 자국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고 이러한 외국의 기지이전 사례는 협상팀이 사전에 입수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바 없음

※ 독일·일본은 기지이전시 자국법령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였으며, 특히 독일은 거울영본의 경우도 건물면적 등에 관해서만 미국기준을 적용했다 함

- 한편, 독일·일본의 경우 Turn-Key방식으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미국측에 제공하였으나 협상팀은 국내 건설업계의 수준을 이유로 미측 거부가능성을 예단하여 Turn-Key방식 채택

을 주장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절감, 군사 know-how 축적 및 국내산업 활성화 계기마련 노력을 소홀히 함

※ Turn Key 방식 :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하에서 인도하는 계약방식. 타당성 조사, 국제입찰·계약성립, 기기의 제작, 조달, 현지토목공사, 건설, 기계의 설치, 시운전, 요원훈련 및 조업지도까지의 일체를 포함

○ 청구권, 손실보상문제

- 90년 합의에서는 이전과 관련하여 SOFA와 관련한 청구권은 물론 SOFA 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측이 부담토록 하였고, 이전으로 인한 기지내 식당, 골프장, 위탁시설 등의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측이 전액 보상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 협상팀은 금번 협정에서 SOFA외 청구권 조항과 손실보상 조항을 삭제하여 문제점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이행합의서(IA 제6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국에 의하여 확인(validate)되고 이전에 직접 관련되는 기타 비용들”을 우리측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기지이전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종 청구권 및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이를 “기타비용들”로 우리가 부담하게 될 여지가 있음 (붙임자료 13. 16. 및 17. 참조)

※ 외통부 조약과 조성호 외무관 진술 :

5차 회의 종료 직전 국방부·북미국이 기지 이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validation process 및 최대 성과로 평가하는 청구권·영업손실보상 삭제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측 수석 변호사(primary lawyer)인 Tudor에게 문의하여 들은 설명은 아래와 같음.

- Validation의 의미가 모호함을 지적하며 그 정확한 의미를 질문하자 Tudor는 웃으며 모호성을 인정(It has many meanings)하였으나, 한국 국방부·북미국측에서는 validation이 veto power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함(I don't think so).

- 청구권 및 영업손실보상 조항 삭제 관련, Lawless 부차관보가 차영구 실장이 제안한 공동발표문 문안(Non-SOFA claims and lost revenue been deleted. Claims will be dealt according to the SOFA)에 찬성했던 점을 언급하며 한국측의 부담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Tudor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한국측의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함(The obligation remains). (붙임자료 15.)

○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

- 협상팀은 90년 합의서에 언급이 없었던 환경 관련 조항을 SOFA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신설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비판받고 있는 기존 SOFA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문제를 처리한다는 방안은 개선된 점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01년 SOFA에 따라 합의된 '환경보호특별양해각서'에 따르면,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만 한미간 공동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환경오염 치유책으로 볼 수 없고,

- 2003.5월 체결된 환경절차합의에서도 반환기지에 대하여 역시 공지의 급박하고 중대한 인간건강에 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환경오염이 있으면 미국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치유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치유가 미측에 의하여 계획되고 행하여지도록 권고되어 있으며 오염치유의 수준과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더러 문건의 법적 구속력이 없이 미군 당국의 정치적 노력 또는 Policy를 확인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음

- 결국 금번 협상에서 환경조항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SOFA체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협정을 통해 미측에 실질적 환경 치유 부담을 갖도록 규정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우며, 실제 기지이전시 우리측이 막대한 환경치유 부담을 떠안게 됨으로써 심각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큼 (독일의 경우는 별도의 협정으로 환경치유 문제를 해결했음)

□ 국회동의절차 관련 문제점

○ 현재 협상팀은 90년 MOA/MOU의 문제점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내용적으로 승계한 이행합의서(IA)와 별도로 국회 비준동의용 포괄협정(UA)을 협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바 (IA는 비준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 문서로 처리 예정)

○ 기지이전 관련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이행합의서(IA)를 포괄협정(UA)의 하부문서로 구성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국회보고로 대체하는 것은 협정내용의 불평

등 요소를 가리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짐

○ 따라서 이전비용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재정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합의(IA)는 물론 이전 관련 기술적 문제 관련 사항을 담은 기술 합의서(E-MOU)까지도 조약체결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함

□ 협상원칙과 진행상의 문제점

○ 미측의 전략 외면

- 용산기지 이전은 근원적으로 90년 합의 각서 체결 당시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 Bumpers 법안으로 드러난 전략변화 움직임으로부터 9.11. 테러사건 이후 '지역군'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군사전략 변화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군사 정책에 따라 요구된 개연성이 큰 것임이 관련 자료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협상팀은 이를 외면한 채 시종 소극적, 수동적, 굴종적 태도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임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 불참여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그 성격상 재경부, 건설부, 기획예산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외에 서울시, 평택·오산시 등 자치단체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참여가 배제되었음

- 미국측이 협상 전과정에서 다수의 고위직 법률가의 철저한 자문 및 참여를 받아 협상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실질적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소속 군법무관 2인 외에는 법률전문가가 협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음 (첨부된 김형동 법무관 진술서참조. 김법무관은 자신의 정당한 법률의견제시가 국방부에 의하여 거부되자 국방부 협상팀 요구대로 의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뒤, 후일 자신에게 직무유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붙임자료 11.과 같이 '비공식' 검토서를 국방부에 보내기조차 하였음)

- 심지어 국제 조약에 관한 유일한 공식 정부조직인 외교부 조약국의 협상참여를 백안시하고, 당해 부서가 협상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들을 무시하였음

※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17966호) 제18조 제3조항(조약국의 분장사항)에 의하면, 조약국은 "2.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체결 및 비준에 관한 사항, 3. 조약 기타 국제협정 교섭문안의 심사, 4.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해서, 5. 주요 조약기타 국제협정의 체결교섭 및 그 시행, 6. 정부의 대외업무와 관련한 법적 자문의 제공, 9. 국제법 및 섭외적 법률

에 관한 사항, 11. 영토 기타 영역 및 주변해양질서에 관한 조약 기타 국제협정 및 법적 업무의 총괄·조정”의 권한을 가짐

○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

- 용산기지이전 문제는 외교·안보의 핵심현안의 하나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향후 합리적인 한미관계 정립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들의 정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 국방부 관계자 등은 03.7월 외통부장관에 의한 협상 대표 임명시까지 적법한 협상권한 없이 임의로 미국 측과 협상을 해온 잘못이 있음

· 특히 대통령님께 기지 이전 추진의 실제배경과 진행과정 및 90년 합의가 갖는 심각한 문제점 등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8.19. 안보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님께서 ‘90년 합의내용의 공개, 문제가 있는 경우 원점으로부터 재협상’ 등을 지시하신 바 있고, 10.11일 파병 관련 비공식 보고시에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다 따져보자. 조기 이전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님. 조기 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 타결’이라고 누누이 합리적 타결을 강조 지시하셨으나 (붙임자료 1. 참조) 협상팀은 대통령의 지시에 어긋나 오로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는바,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임

IV. 총괄평가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 용산기지이전 협상팀의 한 주체로서 양국간 외교창구인 외교부 북미국(북미3과)은
-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에 대한 지나친 맹종적 자세와 현상유지적 속성으로 당당하고 합리적인 협상외교를 전개하지 못하면서 중요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 조약국 등 여타부서의 적법하고 정당한 조언을 무시하고 참여를 제약함으로써 협상 실패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음

※ 외통부 북미3과 김도현 외무관의 진술 :

그들은 용산기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했다.

- 1) 용산기지 이전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얼마가 돈이 들던지 추진해야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과 방미시에 용산기지는 조속히 이전한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은 돈이 얼마가 들던지 이전해야한다는 mandate가 된다.
- 2) MOU/MOA는 유효한 합의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
- 3) 국회와 국민들이 문제삼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의 형식과 문장의 표현을 바꾸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한다.
- 4) 협상은 외교부, 국방부, NSC가 주도가 되어 비밀로 추진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는 문안이 완성된 단계에서 하되 그 범위는 최소화한다.
- 5) 노무현 대통령이나 NSC 인사들은 반미주의자들이므로 이 문제의 개입은 최소화시킨다. (실제로는 아이러니하게 서주석 실장 등 NSC 인사들은 협상 과정의 대부분을 추진해 주었다.)
- 6) 용산기지 이전을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하며 법률가적인 지엽주의는 경계해야한다.

- 상기와 같은 입장을 기초로 조약국의 이견은 무시한다. 협상은 북미국이 주체이며 조약국은 그것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붙임자료 14.)

○ 양국 국방창구인 국방부 정책실(용산기획반, 미주정책과)은

- 오랫동안의 대미 의존으로 인한 특유의 추종자세와 좁은 시야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시 뚜렷한 한계를 드러냈으며, 부처내 법무관리관실 법무관들이 협상과 관련하여 제시한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제한하였음

○ 외교안보분야의 총괄 조정기능을 맡고 있는 NSC (전략기획실)는

-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적 의도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전략방침을 제시하면서 대미의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외통부와 국방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소극적으로 관망하는 자세를 내보이는 등 외교안보의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

2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 현재 협상팀은 90년 합의의 제반 문제점을 거의 해소했다고 자평하고 미 대사관 관련

시설(Non-DOD Facility) 반환 문제와 잔류기지 규모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합의에 이른 만큼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조기에 합의를 하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들어간다는 내부일정을 갖고 있으나

○ 상술한 바와 같이 앞서 검토한 많은 문제점 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90년 합의각서와 비교하여 개악된 점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됨

V. 조치건의

○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과 자주국방에 직결되는 시급성이 되는 문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라야 참여정부의 정책에 부합하고 국회 및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게 될 것임 (최근 평화 관계 시민단체가 90년 합의각서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음)

○ 이미 본바와 같이 일본·독일은 미국이 원하는 기지이전의 경우 미국측의 부담으로 이전한 바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turn-key 베이스를 원칙으로 하여 이전 당시의 시설 이전비용만 일본·독일이 부담하였음 (추가시설비용과 이사비용 등 기타비용 일체 미국부담)

○ 01년 이후 재개된 이전 요구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연유하고 있는 만큼, 이전비용을 원칙적으로 한국이 부담한다는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함

○ 한편 현재의 협상팀은 그 한계를 명백히 드러낸 만큼 전면적으로 협상팀을 재편하여, 위와 같은 기지이전의 현실적 필요성과 함께 협상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붙임자료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미 공수지원 협정의 경우 당초 한국측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간에 합의되었으나, 재협상을 통하여 항공기 사용자인 미국측 부담으로 변경한 바 있음)

○ 아울러 이번 협상과정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규명하여 관련자를 문책하는 한편 외통부, 국방부 및 NSC 관련부문의 인사개편을 적극 검토함이 필요

4)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2005. 11. 17. 한미정상 경주선언)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경주에서 노 대통령과 함께 체험할 수 있었던 한국의 자연미와 옛 문화에 대한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한 핵문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 그리고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관계가 굳건함을 재확인하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여 왔다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2003년 5월 14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한미 관계가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가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평가하고, 이러한 재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동의 이해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이 위협에의 대처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 및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 증진을 위해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일부 감축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합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 측간에 이루어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조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한국 정부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데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2006년 초에 첫 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강조하고,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북한이 조속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채택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공약을 환영하고, 공동성명에 제시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 이행이 논의될 제5차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목표하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핵문제 해결 진전과 상호 보장 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화해의 진전에 따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키고 현 정전체제로부터 평화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화해와 평화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9월 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이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들간에 개최되어야 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수반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으며,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6자회담이 상호 보장하기를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이러한 평화협상이 한미 동맹의 평화적 목표와 부합되게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신뢰 증진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공동의 희망에 입각하여 그들의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APEC이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주요경제협력체로서 향후 역내 중요한 과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다가오는 6차 WTO 각료회의의 성공 및 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의 최종 타결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국관계의 중요한 지주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번영과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비자면제 계획 가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과 함께 비자면제 계획의 로드맵을 개발 하는데 공동 노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비자면제 계획 가입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양국간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교류 증진과 상호 이해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역내 안보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다자안보대화 및 협력메카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것을 주목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6자회담이 역내 다자안보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다는 데 참가국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데 유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PKO 활동과 같은 유엔에서의 양자간 협력과 여타 국제기구에서의 양자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초국가적 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안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방지 노력에 있어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동맹간 완전한 동반자관계를 향해 계속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05. 11. 17

5)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의 추진 방안(2005. 12. 29. 제355차 NSC 상임위 자료 외교통상부)

※정부 문서이고 외교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전문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12.29, 木, NSC 상임위 회의]

NSC 상임위 논의 내용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협의 추진 방안>

- 외교부는 「제3안 : 공동성명Ⅱ」 입장임. 정치적 성격의 선언이지만 통제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외교부장관)

- 우리측이 제시한 3개 기본개념 중 「①전략적 유연성」과 「②동북아 분쟁 불개입」에 대해서는 美側과 합의를 보았으나, 셋째(「③사전협의」)는 미결 상황임. 우리측은 ③과 관련된 향후 상황 도래시 논의하자는 입장임. 따라서 가능하다면 「제2안 : 공동성명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NSC 사무차장)

- 「제2안 : 공동성명Ⅰ」로 합의되어도 美側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우리측 기본개념 1,2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굳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음. (안보보좌관)

- ... <외교적 민감성을 염려하여 중간 생략함>

- 전략적 유연성 인정이 韓美상호방위조약에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무조정실장)
-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은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지역으로 이동시 키는 것은 韓美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관련, 외교부 조약국은 한·미 합의를 국회동의를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韓美상호방위조약 '정신' 으로서만 하기 보다는 '문자와 정신'으로 엄격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함. 그러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절충한 것이 현재의 ③항임. (NSC 사무차장)

□ 결론적으로 「공동성명 I안」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동성명 II안」을 추진함. 「공동성명 I안」의 2개 문안(下記 참조)은 좋다고 봄.

(우리 측 기본개념 1)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우리 측 기본개념 2)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 <이하 ‘외교적 민감성’을 염려하여 생략함>

6)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2006. 1. 19. 한미 외무장관간 전략적 유연성 합의 성명)

제1차 '한·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가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한 결정은 2005년 11월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졌으며, 이는 한국과 미국간 동반자 관계의 지평과 열망이 확대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미 동맹은 전장에서 맺어졌으며, 냉전의 오랜 세월을 견뎌내었다. 오늘날 양국간의 동맹은 동북아 안정의 보루로 계속 남아 있으며, 양국간의 안보 협력은 경제적인 유대관계의 발전과 성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및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는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오고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미 동반자 관계가 광범위한 이익과 목표를 포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 대화는 정례적인 고위급(장관급) 회동과 이를 보완하는 차관급 대화를 통해, 양국 사회가 각기 갖고 있는 저력을 모으고 집중하여 지역 및 범세계적으로 당면한 도전을 극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반기문 외교장관과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략대화의 틀 내에서 앞으로 논의할 역동적인 의제를 설정하였다. 양 장관은 구체적 결과를 도출하면서 양국의 협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치들을 강조하였다. 핵심적인 조치들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공동의 노력을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이, 전 세계에 개방되고 민주적인 제도 및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서의 협력과 조정.

-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 및 대량 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안보협력체제의 준수와 이행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

- 초국가적 전염병 퇴치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적 전략 개발을 위한 노력의 조정과 결합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 유지

- 다자 차원의 평화유지 활동과 위기 대응 및 재해 관리에 관한 협력을 향상시켜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 방법 개발

이러한 조치들은 유명한 외교통상부 차관과 니콜라스 번즈 국무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차관급 전략대화의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반기문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관하여 양국정부의 양해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양 장관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기반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반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 양국이 함께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6자 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하며 베이징에서의 향후 논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 집중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통상관계에 있어서의 최근의 진전을 환영하였으며 양자 경제협력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반기문장관과 라이스장관은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가 한미 관계의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면서 그 출범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금년 후반에 있을 추가적인 대화를 통해 후속 협의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6. 1. 19

■ 부록 : 자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www.antigizi.or.kr